

\* 정부요원

말하자면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련된 자료는 정부에서 관련되었음 직한 곳에 의뢰하였음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측하신 대로 제시하심과 같은 목적을 설명할 만한 자료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 자료가 나오기만 한다면 물론 여부가 있겠습니까만 지적하신 것을 포함해서 조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 시미즈 스미꼬

진상의 규명을 나는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외무대신! 내가 3월 21일의 예산위원회 질문시의 답변에서 종군위안부는 일본인 여성의 수가 많았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 국무대신

어느 자료를 보았더니 장소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로 10대 5의 비율이라던가? 무슨 병 진료 조사기관에서 그러한 발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그러한 분포인 것으로 짐작되지만 장소에 따라 다른 모양입니다.

\* 시미즈 스미꼬

그렇게 일부분 만을 말한다면 전체적인 것을 어떻게 확실하게 규명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들의 진상규명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점을 우리들도 이런 저런 정부에서 나오는 공문서 중에서 문제를 발견하여 질문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더 정밀로 열심히 진상규명에 관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으로 역시 대신은 3월 21일의 나의 질문에 대해 뭐라고 할까. 한국의 국내법으로서 군인, 군속의 경우 전쟁에서 부상한 사람들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정말로 그렇습니까?

\* 정부요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대체로 한국의 법률이므로 우리들이 유권적 해석은 할 수 없지만 우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말하자면 일. 한 청구권 협정을 체결한 후의 시점에서, 한국내에서 일련의 국내법을 제정했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직접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법률입니다. 하나는, 대일 민간 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으로서 이것은 이 법률이 말하는 「대일 민간 청구권의 정확한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으로 함」 하는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971년에 제정된 것입니다. 이 법률의 제 2조에 의하면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고 대상의 범위」 라는 것이 있어서 9 항목에 걸쳐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일 민간 청구권의 구체적 내용인 것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만 유가증권, 혹은 해외예금 또는 일본으로부터 구국한 한국사람이 일본의 정부기관에 기탁한 기탁금이나 또는 보험금 기타 일정의 채권, 최후로 일본국에 의한 군인, 군속, 또는 노무자로서 소집, 또는 징용당해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죽은 사람들 같은 이러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기타 남은 건의 법률에 있어서 또하나는 이것도 직접 관계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대일 민간 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그 보다 먼저 제

정한 청구권 자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시미즈 스미꼬

그러니까 대신은 여기서는 한 팔이 잘려 나갔다면가 하는 상이자들 등은 상대국이 보상했다고, 이것은 설명 중에 그러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사망한 자 만이었고, 그렇듯이 현재 부상 등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보상의 대상에 들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국내법이고 일본과는 관계없는 일이지만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정부요원

방금 설명 올린 바이지만 우리들도 그 후 조사한 결과 판명된 한국의 국내법입니다. 이러한 국내법이 있는데 대해서는 종래부터 듣고 있었습니다만 이의 보상의 대상이라는 것이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한국측으로서 어떠한 판단에 의해 이와 같이 제정되었는가 하는 점은 아무튼 한국문제이니 그 점은 아는 바 없습니다. 어쨌든간에 일. 한 간의 청구권 처리와 함께 우리나라로 부터 제공받은 유상, 무상의 자금을 어떻게 그 쪽에서 활용하는 가에 대해서는 당시 한국측에 위임한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시미즈 스미꼬

나는 수정을 요구했을 뿐입니다.

\* 국무대신

나는 바라건데 어떻게 무엇을 하는 가는 한국측에. 지금 말한 것처럼 당시 일천억엔 여의 무상자금을 제공한 터이므로 그 중에서 무엇인가의 차치가 취해졌을 것으로 생각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므로 정확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정정하겠습니다.

\* 시미즈 스미꼬

정확하지 않으니 꼭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지금 말한 것처럼 결국 일. 한 조약의 청구권 협정과 그리고 한국의 국내에서 한국자신이 행한 대일 민간청구권 신고법과는 전혀 관련되지 않고 있고 연결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만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부요원

좀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 한 청구권, 말하자면 청구권 협정에 의해 우리나라가 무상 3억 유상 2억의 자금이 제공당한 셈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말씀드린 것입니다만 그 자금의 활용에 대해서는 이 협정에서 결정된 경제협력의 방식은 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이것을 기초로 어떠한 청구권의 해결도 한국 내에서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한국측에 위임하여진 문제였던 까닭입니다. 그리고 잠시 전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한국의 법률 중에 1966년의 법률이라는

것에 있어서 이것이 소위 청구권 자금이라는 것을 정의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무상 차관자금 및 원화자금을 말함」이라고, 원화라 함은 소위 현지 통화의 자상자금입니다만 이와 같이 정의하고 있으므로 잠시 되돌아 갑니다만 이 제 1조란 곳에 이러한 법률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역입니다만 「본 법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의해 받아 드리는 자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국민경제의 자주적이고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도록 효율적으로 운용관리, 또는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이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률의 5조라는 항목에서 「민간인의 대일청구 보상」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기서 먼저 말씀드린 본 법에 정해진 청구권 자금 중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보상 수단 대상은 먼저 말한 신고에 관한 법률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협정상의 일로 돌아 갑니다만, 이것은 때까지도 여러가지로 의회에 답변을 올리고 있는 바입니다만 일 한 청구권, 경제협력 협정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로부터 무상, 유상 합하여 5억불의 경제협력을 행하고 그와 같이 하여 청구권의 문제는 해결했다고 그와 같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 시미즈 스미꼬

\* 시미즈 스미꼬  
 많은 설명을 하신 것은 한국의 국내법에 대해서 였고, 일.한 청구권 협정과는 아무런 법적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있을 따름이군요. 그러므로 마지막에 말한 것처럼 일.한 조약이란 어디까지나 경제협정이었을 뿐! 그리고 한국 국민의 개인 한사람 한사람의 청구권이나 보상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 명백해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무상, 유상 5억불 중에서 무엇인가 보상했을 것이라고 그렇지만 그것은 한국내에서의 일이고 이것은 이 일.한 조약에는 경제협력과 청구권 문제해결과의 관련성에 있어서는 법리적으로 전혀 결합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 내에서는 예컨데 무상 3억불 즉 1080억엔 가운데 민간인에게 지불된 금액이라는 것은 아무런 일.한 조약에서 약속되어 있을 리도 없겠지만 한국 국내에서 취한 조치중에 무상 3억불 1080억엔 중에서 지불되었다는 금액은 겨우 50억 엔이군요. 그러므로 전체에 겨우 5.4%가 개인 개인들에게 행해졌을 뿐, 게다가 그것은 사망자들에게만(8,552명) 지불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지금 일.한의 국민 특히 당시의 정권이라는 것은 그다지 민주적, 민주화는 아니였으므로 한국의 국민은 대부분 이제 부터에 대해 납득을 하지 않고, 이러한 문제가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대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일은 결국 일본이 주체적인 법의 밀등에 끕 빠져있는 사람들, 그리고 과거의 식민지 지배나 전쟁의 부정 등으로 박해에 의해 상처받은 피해자들, 그들에게 어떻게 무엇으로 책임을 다하고 나갈 것인가는 무엇하나 일.한 협약이 장해될 이유가 없습니다. 일본이 주체적으로 해결해 나가면 이런 문제는 해결이 쉬워진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특히 꼭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 위안부였다고 나타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유교의 영향이 대단히 강한 한국사회에서 자기 이름을 밝힌다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아

무것도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 다시 그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에 상해하는 일이 됩니다. 때문에 대단히 구체적인 해결에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면 이렇게 이름을 밝히고 나타나는 분들께 만이라도 인도적인 입장에서 정치적인 해결을 해나가기 위함의 시작으로서 무엇인가 성의있는 잠정적인 착치라도 취해주기를 나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만 제발 외무대신께서는 용기있는 결단을 부탁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 국무대신

이것은 인정론이나 그런 입장에서 말한다면 대단히 딱하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고 전쟁이란 많은 범죄적 행위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그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렇다고 해서 정부는 그를 개개인에게 모두 보상함이 가능하느냐 하는 것에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일·중 문제에서도 같고 그 밖에 일본이 침략적 전쟁을 했다고 생각하는 나라에게도 같은 결론입니다. 이것은 그러한 점에서 어디엔 가에 선을 긋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역시 그것은 국가와 국가간의 취급. 결정하는 사항에 의해서 해결하는 것 외에 나라도서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한 것처럼 현실의 정치문제가 되고 있음도 사실이고 인도적 차원의 문제가 되고 있음도 사실이므로 그런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개개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 일본의 「전후보상」에 대해서

다가기 쟁이찌(변호사)

### 왜 지금 「전후보상」인가?

최근 「전후보상」에 대한 논의가 많이 부상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의 국론이 이분화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아시아의 전쟁희생자에 대해서 그 아픔을 생각하고 보상을 해야 한다는 보상공정파와 일본인도 고생을 했다며 각종 처리 조약으로 해결되었기에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양론이 있다. 이 양론이 격돌하는 곳은 「전후보상」이 개인의 인생과 관계되고 사회의 존재방식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지금 전후보상인가」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왜 지금까지 전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미국의 대응의 차이이다. 독일의 패전시기와 유태인 피해자의 유무에 대한 의견의 차이가 있었으며 점령군이 체질의 차이 또는 원폭투하의 약점도 있기 때문에 미국은 미소냉전에 일본을 끌어들이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일본의 과거의 부정의를 바로 잡는 일에는 열의를 보이지 않았다. 동경제판(극동 군사재판) 등에서는 「평화에 대한 죄」 「전쟁범죄」로 일부 전쟁지도자와 말단의 군인, 군속을 재판했는데 「인도에 대한 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천황을 추궁하지 않고 지배층과 관료를 거의 그대로 두고 전쟁책임에서 면죄시킨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둘째로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독일과는 달리 일본의 주변국가는 중국을 비롯하여 약소한 국가들이었다. 연합국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일본의 「존립 가능성」을 배려하여 배상을 거의 포기했다. 중국, 대만, 인도, 소련도 포기했다. 일본이 전후 처리조약을 체결하여 배상 내지 청구권 처리 등의 명목으로 지불할 것은 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싱가폴 등으로 총 15억불 정도이다. 이것도 일본의 경제진출을 위해서 이용된 측면도 있다. 전쟁 중 일본의 박해에 대해서 정면으로 보상을 요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실현하려고 한 나라는 없었다. 특히 군국주의 일본의 최대의 피해자인 중국은, 일본인과 중국인 모두 군국주의 일본의 같은 피해자라고 하여 일본의 가해자성을 추궁하지 않았다. 이 것에 의해 중국의 사의(思義)를 느끼는 사람이 많지만 1천만 명 이상이나 되는 피해자 구제와 일본의 과거의 부정의를 바로 잡고 일본사회의 체질을 변혁하여 도의를 확립해 나가는 기회를 놓쳤다는 의미도 있다.

세째로 미소냉전에 알려들어가는 형식으로 일본의 지식인, 정치가 등 새로운 지도자들도 각각의 이데올로기 논쟁에 힘을 쏟고 논쟁하는 것에 바빠서 일본사회를 내면으로부터 반성하는 작업은 거의 못했다. 독일에서 학자, 학생운동 그리고 그것을 추진하는 정치가가 「과거의 극복」 투쟁을 추진한 것과 큰 차이가 있다. 부모세대가 범한 부정의를 추궁하고 자신의 도의를 확립하려고 한 서독과, 여전히

권력과 권위를 갖는 부모의 강한 영향하에서 경제건설에만 에너지를 소비한 일본이라는 대칭적인 구도가 있다. 이처럼 여러가지 이유에 의해서 일본에서는 오늘날까지 보상이 진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 소련의 붕괴로 말미암아 전후세계를 지배한 미소냉전 구조가 없어졌기에 양진영 측의 이데올로기 대결에 우왕좌왕할 일이 없어질 것이다. 일본은 겨우 주체적으로 자기들의 이념을 구축해야 할 시기에 온 것이다. 그리고 이 시기에 아시아여러지역에 산재하는 일본에 의한 침략전쟁의 피해자가 그 목소리를 높이게 되었다. 그것은 각 지역의 민주화, 경제발전, 일본·북한교섭 등 여러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전후 반세기동안 억압을 받아온 심정이 고령화된 피해자를 중심으로 폭발된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시아의 피해자의 목소리를 받아 들이고 문제와 맞붙는 시민운동이 일본에서 속속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재한 피폭자 문제에 대해서는 오사카, 히로시마, 나가사키, 도오쿄오 등에서 20년 이상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 그리고 종군위안부 문제는 여성단체, 종교단체를 포함해서 관련되는 시민들은 아주 많다. 또 독일의 전후처리 실태가 본격적으로 소개되어 일본과의 차이가 큼을 지적받고 있다. 미국, 캐나다가 일본계의 미국인에 대한 보상을 성실하게 실행한 것과 구소련의 폐레스트로이카에서 보이는 인권회복 운동 등 국제적 조류라고 말할 수도 있는 보상의 흐름이 겨우 일본에 왔다고도 할 수 있다. 국제화를 추구하는 일본이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이상이 「왜 지금 전후보상인가」의 해답이다. 이제는 필연적인 역사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이제는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가 우리의 문제로 남아있다.

### 피해의 실태와 요구

일본은 전쟁 중 중국을 비롯하여 홍콩,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제국과 태평양 지역을 침략했다. 그리고 식민지였던 조선과 대만 사람들을 전쟁에 동원하여 많은 피해를 주었다. 그러한 피해는 수없이 많지만 다음의 사례가 현재 전후보상을 요구하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한 예이다. 아래에서는 1991년 8월 3-4일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후보상 국제포럼」에서 호소를 한 그들을 중심으로 개관하겠다.

#### 1. 한국

##### 「사할린 잔류 한국조선인 문제」

현재 일시 귀국과 재회는 진행이 되고 있지만 생활유지가 곤란하기 때문에 영주귀국에는 장애가 있다. 그래서 일련의 보상청구 재판중 가장 처음 재판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조약 등의 전후처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명백해지고 일본정부도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의원 간담회의 활동에 있어서 일본정부는 1992년도 예산에 영주귀국자의 실태조사비를 포함하여 보상에 연결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재한 피폭자 문제」

히로시마오 나가사기에서 피폭당한 조선인 중 약 2만 명이 한국에 귀국했으나 일본인 피폭자와는 달리 아무런 원호도 없이 피폭자로서의 고통을 받아 왔다. 1991년과 1992년의 예산에서 일본정부는 '인도적 견지에서' 라고 하여 40억 엔의 자금을 냈으나 그 사용방도는 제한을 받았으며 일본인 피폭자와의 차별도 크다.

#### '기타 강제연행, 군인, 군속, 종군위안부 문제'

위의 두 사례 이외에도 대량의 전쟁동원 희생자가 존재하지만 일본정부의 원호는 전혀 없다. 특히 최근에 밝혀지고 있는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지금까지 일본군의 관여를 부정해 왔으나 각종 자료 등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조사도 충실히 않으며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도 강구되어 있지 않다.

#### 2. 대만

식민지의 주민들은 전쟁에 동원되었으나 전후에는 「일본인이 아니다.」라고 해서 원호대상이 아니었다. 재판의 결과 대만인 군인, 군속의 전사자 등에 대해 1 인당 200만 엔이 지급되었으나 금액도 적고 다른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조치도 없다.

#### 3. 중국

1천만 혹은 2천만 명이라고도 말해지는 사망자를 비롯하여 731부대의 인체실험 희생자나 포로로 연행된 피해자 등 모두 지적하지 못할 정도이다. 1972년 일중 국교선언에서 중국정부는 배상을 포기했으나 개인적 희생자의 보상 청구문제는 남아 있다고 하여 현재 중국에서도 논의가 시작되고, 1992년 전국 인민대표자 회의(일본의 국회에 해당된다)에서 1800억 불의 보상청구가 제안되었다.

#### 4. 홍콩

3년 8개월에 이르는 일본군의 홍콩지배 피해문제로 특히 군포문제가 있다. 홍콩달러를 강제적으로 일본군의 군포와 교환을 시키면서 전후에는 무효화했기 때문에 큰 재산적 피해가 남아 있다. 현재 약 5억 엔분의 군포가 있다.

#### 5. 필리핀

일본군의 전투 중 주민학살은 중국 다음으로 필리핀에서 대량으로 발생했다. (200만 명이라고도 전해진다.) 아직 조직적인 피해자의 운동은 없으나 전쟁이후 방치된 사람들의 생활은 비참하다.

#### 6. 말레이시아

일본군은 점령 중 중국인에 대한 학살을 했다. 또 말레이지아인에게 일본 태연 철도건설을 위한 강제노동을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다.

#### 7. 인도네시아

일본에 의한 점령당시 일본군의 보조조직으로서 수만명의 인도네시아인을 징병했다. 다수의 사망자를 내고 일본이 패전한 후에는 방치되었다.

#### 8. 기타 태평양 지역

펠라우, 껌을 비롯하여 태평양을 침략한 일본군은 현지 사람들을 징용하여 군속으로 일을 시켰다. 격전속에서 사망자도 나왔으나 전후, 피해회복 조치를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

#### 9. 제일 한국인, 조선인 피해자

일본군인 또는 군속으로서 상의군인이 되었거나 또는 B,C급 전범으로 강요당했는데 전후에는 「국적조항」을 이유로 아무런 원호나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타의 사례도 있으나 이상과 같이 아시아 지역에는 일본에 의한 피해자가 현재도 많이 산재하고 있으며 그 많은 사람들이 단체를 결성하여 일본정부에 대해 일부에서는 재소도 포함하여 보상요구 운동을 하고 있지만 성의있는 답변을 못받고 있다.

#### 「전후보상」이란?

제 2차 대전 후 독일의 주변 제국은 나치의 부정의와 박해사실에 대해서 나치를 추궁하여 피해자에 대해서 보상을 하게 했다. 이것은 단순히 승자에 의한 폐자에 대한 조치가 아니라 국제질서에서 도의를 어떻게 회복하는 가를 연구한 결과이다. 제2차 대전후는 배상보다 보상이 중시되었다. 뉘른벨그 재판에서는 나치의 지도자 뿐만 아니라 법률가, 의사, 관료, 그리고 기업가가 처벌되었다. 그 범죄의 근거법은 국내법이 아니라 확립된 국제법인 「평화에 대한 죄」, 「전쟁범죄」, 「인도에 대한 죄」였다. 특히 국가간 도의적으로 처리했어야 할 인도에 대한 죄는 중요하다. 「인도에 대한 죄」는 뉘른벨그 국제군사재판소에 「IMT조례」의 제6조 C항에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전전 또는 전시중에 모든 민간인에게 행해진 살인, 노예화, 납치 및 기타의 비인도적 행위 또는 범죄자의 국내법에 저촉되느냐 안되느냐에 상관되지 않고 본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범죄의 수행으로서 또는 여기에 관련되어 행해진 정치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이유에 기초한 박해행위」 즉, 전시에 어떤 민족집단에 대해서 국가가 행한 조직적인 박해행위가 있으면 그 가해국의 합법적 장치에 상관없이 국제적 도의인 인간성에 대한 죄로서 처벌한다라는 이념을 확립하려고 한 것이다. 그 이념은 제2차 대전 후 국제정의의 확립을 위해서 여러나라가 진지하게 노력한 가장 가치있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또 현재까지 계속되는 국제적 인권의 흐름의 근본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물론 국제정의의 회복을 위해서는 뉘른벨그 재판이라고 하는 형사제재의 측면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당시의 미국의 모건소 재무장관은 「인도에 대한 죄」 등의 국가의 부정에 대해서 형사제재 후에 보상이 있어야 한다라는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였다. 그리고 구미의 압력도 있어서 서독은 「연방보상법」, 「연방변제법」 등의 나치의 부정의의 보상에 노력을 하게 된다. 또 서독은 이스라엘과 유대인 회의 그리고 프랑스 등 주변 12개국에 의해 포괄협정을 체결하여 각국의 피해자에 대해서 보상을 지불했다. (현재까지 독일이 한 보상총액은 약 10조엔이다.) 서독의 각 주나 소수이지만 그룹사, 벤츠사 등 민간기업도 과거의 청산에 참가하고 있다.

이것이 패전국의 의무인 배상과는 다른 보상이다. 그러므로 전승국에도 전시

종의 부정의가 있으면 보상은 있을 수 있다. 미국, 캐나다의 일본계 사람들의 강제수용에 대한 보상도 이것이다. 이처럼 국제적 도의의 확립을 위해서 각국이 자기 나라에 있는 부정의를 바로 잡기 위해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포츠담 선언으로 연합국에서 아시아에 대한 침략과 조선인민의 노예상태의 원상회복 즉, 보상을 요구받아 이것을 1945년 8월 15일에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일본국 헌법 전문에서 「專制와 @종과 압박과 편협」의 극복과 청산을 국제사회에서의 명예있는 지위를 획득하는 전제조건으로서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후, 보상의 의무를 전혀 방치한 채 반세기가 지났다. 지금 다시 보상을 요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전후보상'이라고 칭하는 바이다.



▲ 90년 10월, 일본 대사관에 공개서한 전달

## 전후보상에 대한 활동

오가자끼 도미꼬(일 사회당 의원)

일본 사회당은 전후 46년간 침략전쟁이라는 죄과를 되풀이 하면 안된다는 입장에서 전쟁을 부정한 헌법을 수호하고, '자위대'에 반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인 자민당은 일관해서 자위대를 증강시켜, 국제공헌이라는 명분으로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노린 'PKO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성립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당은 이 법안의 성립을 저지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후 46년간은 군비를 강화시켜 온 역사입니다. 또 동시에 전후에 당연히 해야 했던 책임을 지지 않았던 역사이기도 합니다.

전쟁전, 일본은 힘에 의하여 한국, 대만을 식민지화하여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을 침략하고 수많은 잔학한 행위를 했습니다. 그 전형적인 하나가 종군위안부입니다. 병사들의 성의 노예가 되고 고통을 강요당한 여성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일본이 가장 부끄러워 해야 할 행위입니다. 겨우 지금, 그 사실을 인정하게는 되었지만 최근까지 이 수치스러운 행위를 일본은 은폐하고 사실을 왜곡하여 왔습니다. 또 자신의 의지와 달리 전쟁에 동원되어 커다란 피해를 입은 구식민지의 군인, 군속이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는 그 외에도 많으며 과거 식민지 배와 침략전쟁의 잔학성, 비인간적 행위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사죄, 보상은 일본으로서 당연합니다.

또 전후 일본은 자기나라 국민의 군인, 군속을 중심으로 은급법이나 전상병 사전몰자 유족 등 원호법 등으로 세심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13개나 됩니다만 일반 민간을 빼놓고, 전쟁범죄자에 까지 원호를 하며 군인·군속에게 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보상을 받아야 하는 구식민지 한 국조선, 대만의 사람들을 외국인이라는 것을 이유로 거의 보상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군비를 증대하고 전후보상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회당은 정부의 자세에 대해서 사회당은 추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사회당은 전후의 부흥과정에서 일본의 근로자의 생활개선을 중시하여 아시아 태평양의 민중, 특히 전쟁피해자에 대한 정책이 약했던 것도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회당은 이것을 반성하고, 전후 보상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시민운동과 아시아 태평양의 전쟁 피해자가 모여서 '전후보상 국제포럼',을 개최하였는데 이 기획의 의의를 받아 들이고 사회당은 전후보상 실현을 위해 작년 말 '일본의 전후 책임과 새로운 아시아 관계의 창조'라는 심포지움을 열어, 종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하여 교과서 문제 등을 다루어 왔습니다.

이 연속 기획의 끝으로서 아시아 태평양에 대해 본격적 침략을 시작한 날이기도 한 12월 8일에 「포럼-일본의 전쟁책임의 새로운 아시아 관계」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포럼에서 다나베 마코또 위원장이 "사죄와 보상, 그리고 결의"라는 제목으로 "많은 아시아, 태평양의 사람들에게 고통과 슬픔을 가져오게 한 우리나라의 행위를 엄격하게 반성한다"라고 하면서 "이 분들에게 나는 사회당 위원장으로

서 그리고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으로부터 사죄를 한다” 그리고 “사죄와 보상은 함께 되는 것이다. 보상이 없는 사죄는 위선이다”라고 전후보상 실현을 위한 굳은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결의를 구체화 하기 위해서 포를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성명을 채택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여론을 환기하여 전후보상 실현을 위하여 노력한다. 그리고 시민과 사회당이 공동으로 보상실현을 위해 “시민과 사회당의 전후 보상위원회”를 설치를 하기로 확인한다. 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의 반성과 사죄의 국회결의’를 위해서 노력한다.
  2. 식민지 지배와 전쟁의 비참함을 후세에 남기는 역사교육의 일환으로서 교과서에 진실을 기술하여 각 지에 자료관, 기념관의 건설을 촉진하는 활동을 한다.
  3. 보상을 위해 국내 및 아시아, 태평양의 피해국에 대한 조사 그리고 여러 나라의 보상사례의 연구를 위해 조사단의 파견을 연구, 검토한다.
  4. 1992년 말을 목표로 ‘보상을 위한 구체적 시책’을 작성한다.
- 이상을 한국, 조선,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의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결으로서 밝힌다.

1991년 12월 8일 아시아 태평양 전쟁 50주년을 맞이하여,

이 성명에 의해서 금년에 들어 ‘시민과 사회당의 전후보상문제 간담회’를 결성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시민과 함께 ‘전후 보상’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의견교류와 정보교환, 연구를 진전시키고 그 성과에 의해서 ‘국회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국회에서 우리 당의 각위원의 질문과 추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모순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일. 한 청구권 협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해결되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일. 한 청구권, 경제협력 협정으로 무상, 유상 총 5억불의 경제협력을 하여 그것과 병행해서 청구권 문제를 해결했다.” “청구권 포기조약의 의미는 국가가 갖고 있는 외교보호권의 의미이다. 일. 한 청구권 협정의 제 2조 1항에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라고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2항에 예외규정에는 종군위안부는 적용되지 않는다. 3항에서 재산권리 및 이익에 관한 조치, 국내적인 조치, 그리고 청구권에 관해서는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해서 국내법을 제정하여 한국국민의 재산권을 소멸시켰다.”

다만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즉, 실태적 권리가 아닌 청구권은 이 법률의 대상이 안되고 있다. 이러한 청구권은 외교보호권의 포기를 말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해도 무방하다.”라고 재판을 하는 권리는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종군위안부 문제로 소송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미야자와 수상은 “소송 등의 경과도 보면서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제 3자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며 정부로서의 책임을 포기하고 있다.

또 종군위안부였던 문옥주 씨가 군사우편 저금의 지불청구를 하고 있지만 “65년에 체결된 일. 한 협정 및 관계법률에 의해서 대처할 수 밖에 없다”라고 발언하여 ‘외교보호권의 포기만’을 주장하는 한편 개인의 청구권에 관해서는 협정을 이유로 부인하고 있다.

종군위안부에 관해서 미야자와 수상은 “당시의 일본정부가 종군위안부의 모집 및 위안소의 설치, 경영에 관해서 참여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여 정부의 참여를 인정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외무대신이 “종군위안부는 매우 애석한 일이다. 이것은 하나의 예이다. 그러므로 개인에 대해서 전부 보상할 수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보상을 거부하는 발언을 하고, 그러나 이 문제가 국제문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나 위령비를 세운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로서의 보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우리 당의 ‘전후보상 정책’은 현재 조사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우리들의 중간적인 전후보상에 대한 생각은 아래와 같다.

전후 46년간 일본이 아시아 태평양의 전쟁피해자를 방치하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의 전모가 불명확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전후보상’을 어렵게 하고 있는 요인이다. 그러나 아직 침략전쟁의 비참한 잔학성의 증인은 살아있으며 행정기관이 공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은폐되어 있는 자료, 그리고 우리 측에서도 발견해 내지 못하고 있는 자료가 산적해 있다. 전쟁종료와 함께 군부는 부끄러워 해야 할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자료를 불태운 흔적이 있지만 남은 자료도 살아 있는 증인에 기초한 조사를 통해 전쟁피해의 실태를 어느 정도 밝히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은 ‘피해의 실태조사’이다. 이 조사는 1) 각 시민운동의 협력을 받고 사회당이 조사를 한다. 2) 증인의 발굴과 증언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든다. 3) 아시아 태평양의 민족으로부터 직접 증언을 듣는다. 4) 이러한 활동을 기초로 하여 정부에 자료공개를 요구한다. 5) ‘대외 전후보상 조사 특별위원회’를 중. 참의원 양원에 설치하도록 요구한다. 6) 그리고 관계하는 각국 정부와 합동 조사기관의 설치 등을 검토한다. - 이상을 우리 당이 진전시킬 생각이다.

이 작업과 동시에 아시아 태평양에 대한 침략과 범죄 행위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史跡에 보존하는 것과 역사 자료관 건설 추진, 역사교육 특히 교과서에 바로 기술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러한 조사와 역사에 대한 반성 위에서 일본은 구체적으로 아시아 태평양의 전쟁 회생자에게 사죄와 보상을 해야 한다.

사죄는 국회결의로서 전쟁 회생자에 대해 진지하게 행하여 그것에 기초하여 공식적인 사죄를 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사죄와 보상은 같은 것이다. 보상을 조기에 실현하는 것은 일본의 의무이다. 보상에 대한 우리들의 기본적인 인식은 일본의 전쟁범죄인 인도에 대한 죄에 의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각국과의 신뢰와 우호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상은 불가결한 것이다.

사회당이 보상정책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무엇보다도 중요시하여 그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겠다. 또 여러나라의 보상정책도 참고로 할 생각이다. 미국의 일본계 사람들에 대한 보상 그리고 독일에서는 연방보상법과 연방변제법에 의해서 나치의 박해에 의한 피해나 빼앗긴 재산을 유태인에게 반납하고 이스라엘이나 유테인 협회 및 불란서를 비롯한 구라파 각국과 ‘포괄협정’을 체결하여 나치의 반인도적 행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보상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 등은 우리들에게 참고가 된다.

구체적인 시책으로 구식민지의 군인·군속에 대한 보상은 은급법 등에 원호정책의 국적조항을 폐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 강제연행된 종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해서 미지불 임금이나 강제 가입된 우편저금을 지불하고 보상을 하는 등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 생각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당으로서 구체적인 보상정책을 만드는 것은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할 때 최대한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피해의 실태를 완전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어떤 정책이 피해자의 고통과 분노를 없앨만한 것인가에 대해서 현재 검토중입니다.

사회당은 구체적인 보상방법을 급히 구상해야 하며 현재 이 작업을 진행중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시아 태평양지역 전쟁피해자의 증언을 듣는 것과 함께 일본국민의 이해를 구하면서 보상정책을 가능한 빨리 작성하여 정부에 이를 실현하도록 요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 아시아 태평양전쟁 한국인 희생자 보상 청구사건

### 訴 狀

원고 : 박 칠봉 외 34명

피고 : 일본

#### 청구의 취지

- 피고는 원고에 대해 각 일금 2천만 엔을 지불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등의 판결 및 가집행의 선언을 요청한다.

#### 청구원인

##### 1. 「한일합병」과 조선민족에 대한 박해

###### 1) 일본에 의한 조선식민지 지배의 확립

명치초기에 정한론을 내세워, 조선침략 패권을 다룬 청일전쟁(1894년 - 1895년)과 노일전쟁(1904년 - 1905년)에서 승리를 거둔 일본은, 한반도에서 청나라와 러시아의 영향을 배제시키고, 1905년 11월 17일, 「을사보호조약」에 의해 한반도의 외교권을 빼앗고, 한국정부의 내정을 통제하는 「통감」을 두므로 사실상 한국을 식민지로 하였다.

그리고, 한국민의 저항을 탄압하면서 1910년 8월 22일, 「한일합병에 관한 조약」에서 「한국 황제폐하」로 하여금 「한국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 또한 영구히 일본 황제폐하에게 양도, 시키고, 당시의 대한제국을 합병하여 이것에 의해 조선의 식민지화를 법적으로 완료시켰다. 이 한일합병에 동반하여 일본은 조선인에 대해 일방적으로 「일본신민」으로 함과 동시에 일본인과 한국인을 구별해 차별하기 위한 조치로서 일본 호적법과는 별개로 조선호적령을 내렸다.

한국을 합병시킨 일본은 조선통치를 위해 조선총독부를 설치해, 총독을 천황에게 종속시켜 한국의 정무 및 군무를 통괄하는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헌병, 경찰관에게 살상에 이르기까지 87항목에 이르는 「즉결권」과 「강제집행권」을 주는 한편, 집회결사 뿐 아니라 조선어 신문간행까지 모두 금지시켜 조선인의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를 맷아 식민지 지배에 반대하여 일어나는 조선인민을 탄압, 학살하고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도록 강요하였다.

이러한 조선의 식민지 지배 아래, 일본은 한일합병 직후부터 9년간에 걸쳐 「토지조사 사업」, 「임야조사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전답 약 100만 경보, 산림 1,180만 경보라는 광대한 토지를 농민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1918년 쌀소동에 의해 나타난 일본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여 일본의 저미가, 저임금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1910년부터 15년 간에 걸쳐 조선에 있어서 「산미증식계획」을 강제로 하여 쌀 등의 식량을 수탈하였다. 이 때문에 당시 조선인의 80%를 차지하는 농민대중은 심한 기아선상에서 허덕이고, 토지나 식량을 빼앗긴 농민들은 살아남기 위해 소작인이 되거나, 유랑민이 되는 자도 많았고 또한 고향을 버리고 일본으로 유입하는 사람도 늘어났다.

### 2) 일본의 침략전쟁

1929년부터 시작된 세계공황이 일본에 파급하자, 일본은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아시아 대륙침략 정책을 펴게 되었다. 그 때문에 대내적으로는 정치적 자유의 억압이 심해지고, 1932년 5.15 사건에 의해 정당정치가 종지부를 찍고, 정치에 대한 군부의 발언력이 강력해져 파쇼적 체제가 형성되어 감과 동시에, 대외적으로 일본은 1931년 9월에 봉천외곽의 柳 路에서 철도폭파사건을 일으키고 이를 중국군에 의한 것으로 하여 「만주」를 무력 점령하고(만주사변), 또한 1932년 상해침입, 1933년 국제연맹탈퇴, 1936년 일·독 방공협정체결, 1937년 중국본토 침략(중일전쟁) 등, 차례차례로 아시아 대륙에의 침략을 진행시켜 나갔다.

이러한 배경속에서 조선은 아시아에 대한 일본침략의 병참기지로서 위치지어져 식량은 물론, 지하자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군수공업자원이 더욱 대대적으로 약탈당했다. 그리고, 중일전쟁의 장기화, 전선의 확대화에 따라 일본은 조선의 물적 자원 뿐 아니라 후술한 대로 인적 자원을 일본의 침략전쟁 도구로서 강제적으로 전쟁에 동원시켰던 것이다.

### 3) 「황민화」 정책 실시

장기화, 대규모화된 전쟁을 수행하는 데는, 병사, 군용자재의 거대한 공급을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일본은 1938년에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하여 「전쟁...에 대해 국방목적 달성을 위국전력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시킬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자원을 통제 운용한다」는 (동법 제 1조) 체제를 만들어, 이 국가 총동원 체제를 바탕으로 타민족인 조선인을 「일본신민」으로서 전쟁에 동원하기 위한 「황민화」 정책이 강행되었다.

즉, 1937년 10월 「우리들은 황국신민이 되어 충성으로 나라에 보답한다」하는 「황국신민서약」을 제정하고, 아이들에게까지 이르는 모든 조선인들에게 제창을 강제하고, 또 「일本国기계양」, 「궁성요배」, 「신사참배」 등을 강요하고, 이들에 따르지 않는 자를 「不遵朝鮮人」으로서 탄압대상으로 하였다. 게다가 1938년 3월 조선교육령을 개정하여, 조선어교육을 폐지하고 일본어 상용을 강제하는 한편, 1939년 11월에는 조선인에게서 고유한 성씨를 뺏어 일본식 성씨를 강요하는 「창씨 개명」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황민화정책 실시에 의해, 일본은 조선인에게서 이름과 민족을 빼앗아 조선인을 일본의 침략전쟁에 동원하기 위한 정신적 기반을 구축하려 하였다.

### 4) 강제연행

중일전쟁이 수령화, 장기화 되고 전선이 확대됨에 따라 일본본토의 전시산업 노동력이 병력으로 동원되었기 때문에, 심각한 노동력 부족이 발생해서 그것을 해소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일본은 조선에서 노동력을 강제적으로 동원하였다.

조선에 있어서 조직적, 집단적인 노동력 동원은 1939년 9월부터 시작되어 당시 「모집」 방식이었으나 「모집」은 이름 뿐이고, 모집인 수를 할당받은 면사무소나 기타 관할 주재원에게 있어서는 모집인 수를 확보하기 위해 응모하게 하지 않으면 안된 의무가 사실상 과해져서 그 결과, 면청, 면사무소 노무계, 주재소 경찰관들이 일체가 되어, 노동자를 강제적으로 불잡아 가고, 그 후 엄중한 도망 방지조치를 위해, 일본, 檸太 그리고 아시아 전역에 보내어졌다. 즉, 실질적으로는 「모집」의 이름을 빌린 정부기관에 의한 강제연행밖에 되지 않았다.

1941년 12월 8일, 중일전쟁에서 아시아 태평양전쟁으로 확대한 것에 따라 「모집」 방식으로는 일본본토의 심각한 노동력부족을 보충하기가 어렵게 되어 조선인 노동자 연행을 보다 조직적, 강제적인 것으로 하기 위해, 1942년 2월부터 「잔알선」 방식에 의한 동원을 하고 또한, 1944년 9월에는 국민징용령을 군용원 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적용시켜 조선인 노동력을 뿌리채 뽑아 동원하였다.

### 5) 군인

#### (1) 지원병제도 실시

일본이 식민지 조선에 있어서 처음으로 징병제를 실시한 것은 패전직전에 막 다른 1944년의 일이었다. 일본 통치자들이 합병 아래 오랜동안, 징병제 실시를 주저하고 있었던 것은 민족적 불신감 때문이었다. 조선인이라는 타민족을 일본군의 구성원으로 하여 무기를 가지게 함으로 군대 내에서의 반란, 적군과의 내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당국자에 의해 평상시 표명되었다. 특히 전장이라는 극한 상황속에서 생사를 함께 하지 않으면 안된 군당국자, 일본인 장병의 불안과 초조는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였다. 더구나, 그러한 우려의 감정은 태평양전쟁에 돌입하여 전국이 불리해져 감에 따라 더욱 강해졌다.

일본군대는 단순한 전투수행 조직이 아니었다. 그것은 천황을 정점으로 한 전제적 지배로, 나아가서 복종하는 이데올로기를 절대복종의 환경 속에서 주입하고, 완성하는 場(황군)이고, 일본국민은 징병에 의해 국가에 도움을 주는 인재와 그렇지 않은 자로 구별되어진 후 군대내, 특히 내무반에서의 불합리한 대우, 폭행을 당해 가면서 권력이 있는 자의 불합리한 명령에 복종하는 정신을 철저하게 주입시켜 천황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특수한 이데올로기를 절대적인 것으로 하는 일본군에 독자적인 문화와 민족적 자아를 가진 조선인을 편입시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이다. 일본의 통치자들은 조선인의 문화를 파괴하고 민족성을 말살하는 여러 정책을 성공리에 전개함에 의해 비로서 일본군의 이데올로기적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식민지의 인적 자원에 의해 병역을 증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37년 중일전쟁 개시에 의해 전쟁수행에 필요한 병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선에의 징병제 실시는 필수과제가 되었다.

또 「앞으로의 원정전에서 일본민족만의 희생으로 전쟁이 치러진다는 것은 부당하다. 일본민족만이 전사하고, 조선민족이 남을 때에는 그 왕성한 번식력으로 하여 중대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라는 의견도 강력히 제창되었다.

이렇게 하여 노강교 사건 직전인 1937년 7월 2일, 조선군(조선에 주재하는 일본군)은 육군성의 자문에 답해, 조선 병역문제 해결을 위한 시험적 제도로서 「조선인 장정을 지원에 의해 현역에 복무시키는 제도」를 창설할 것을 진언한다 (조선군 사령부 극비 「조선인 지원병 제도에 관한 의견」). 그리고 징병제 실시는 수십년 후에 상정되면서, 1938년 4월 3일, 「육군특별지원병령」 실행에 의해, 지원병 제도가 실시되었다. 육군 특별지원병 제도(이하 「지원병 제도」라 한다)는 당초 「보통 이상의 생계를 꾸림」 「사상견고한 자」 (조선총독부 「조선인 지원병 제도 실시 요망」), 즉 일본의 지배에 호의적인 종류이상의 계층에서 지원자를 모아, 황국 신민으로서의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병력으로 확보함과 함께 황민화 운동(조선인의 민족성을 말살하고, 나아가서 천황에게 충성을 맹서하는 일본국민으로 하는 관주도의 운동 제시책)의 견인력으로 하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실제의 실시과정에 있어서는 그러한 종류이상의 계층은 지원을 거부하는 자가 많았다. 더구나, 조선 총독부는 각 도별 지원자 수를 공표하는 등 채용 예정자 수의 몇십배의 지원자 수를 확보하려고 각 도, 군으로 하여금 각 면에 지원자 수를 할당하여, 지원자 확보는 강제적인 것이 되었다.

「만일에 그것이 실패로 끝나는 것이 되면, 그것은 반도의 장래에 중대한 문제」(조선 총독부 육군병 지원자 훈련소 교수 海田要大佐)라는 위기 의식속에서 지원자 수는 「애국열의 바로메타(척도)」로서 이해되어 말단 행정조직인 면에서는 학교 졸업자를 협박하거나, 부친을 구류하는 등 가족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이름만 빌리는 식의 면벌으로서 지원시키거나 하여 지원이라는 이름의 사실상의 강제가 행해졌다.

또 육군성 당국자도 강압에 의해 할 수 없이 지원한 자가 많다는 것을 숙지하고 있었다(「육군성 제회의 기록」, 1941년 4월 16일 국장회의)

이렇게 하여 실제로 지원하고 채용된 자는 대부분이 소작인 등의 빈곤층이어서 지원병 제도는 이데올로기의 대대적인 선전과 빈곤자들의 강제적인 병사 확보라는 결과를 낳았다.

## (2) 학도에 대한 지원강제

1943년 일본인 학살에 대해 그 때까지의 징병유예를 폐지하고 징병검사를 실시해 법문계 학생은 곧 징집해 입영시키게 되었다. 「학생出陣」이다. 이것과 병행하여 조선인 학생에 대해서는 아직 징병제는 실시하지 않았지만 지원병에의 지원강제 방법에 의해, 사실상의 징병이 행해졌다. 그러나 또한 일본에 유학하고 있던 조선인 학생만이 개인적 사정의 여하를 불문하고 강제의 대상이 되어 지원에 희생이 되었고, 이 조치는 일본인 학생과의 균형을 피하기 보다는 일종의 본보기였다. 또 다른 면에서 이 조치는 일찌기 3.1독립운동(1919년)의 지도적 역할을 해낸 이래 항상 일본의 권력에 대항해 독립운동가, 민족운동가 등을 배출해온 재일조선인 학생들에게 타격을 준다는 치안적 의미도 가졌다. 1943년 10월 20일, 육군 특별지원병 임시 채용규칙이 공포, 시행되어, 그날부터 그해 11월 20일

까지가 지원서류 제출기간이고, 동년 12월에 채용검사를 받아, 현역병으로서 1944년 1월 20일 입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당초, 일본당국은 친척 연고자를 통해 압력을 가해 지원시키려 했으나, 지원자는 적어 1943년 11월 10일까지 적격자 2,830명 중 지원자는 200명도 채 안되었다. 그래서 동일 조선총독이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지원시키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11월 14일에는 명치대학에서 「반도학생 결의대회」를 열어 지원을 당연시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각 도, 각 군마다의 출신학생이 전원 지원했는지의 여부를 문제로 해서 「개성출신자는 전원지원」 등의 기사가 신문에 발표되었다. 또한 유진오, 이장수 등의 조선인 지식인을 동원하여 지원격려 캠페인이 열리어 「절대 머뭇거려서는 안된다.」 등의 문자가 신문지상에 실리고 11월 19일에는 드디어 「지원하지 않으면 비국민」이라는 주장이 「매일신문」 제 1면에 게재되었다. 11월 21일에는 지원하지 않은 자는 「엄격히 훈련, 육성」 시켜 전원을 탄광 등의 강제 노동에 징용하기로 결정되었다. 이렇게 하여 조선인 학생들은 지원하지 않으면 징용되고, 가족의 가게나 사업에도 곤란을 겪게 되어 지원시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졌다. 기한을 넘기고 나서 지원서류를 제출한 자를 포함해, 최종적인 지원자 수는 적격자 2,830명 중 2,034명에 달했다.

## (3) 징병제도 실시

1941년, 태평양 전쟁의 개시와 전선 확대에 의해 일본 통치자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대규모 병사확보가 필요해졌다. 더구나 전쟁의 확대는 군수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력의 필요성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군당국자는 전선에 보내는 병력은 가능한 한 축소시켜서라도 후방의 생산력 증강이나 「인적 국력」의 재생산에 힘을 쓸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었다.

이렇게 하여 일본민족의 손해를 최대한으로 회피하면서 「외지 민족을 병력으로 활용하는 것은...초미의 급무」(육군성 병비과 「대동아 전쟁에 따른 우리 인적 국력검토」, 1942년 1월 20일)가 되었다. 그래서 조선에 대해서도 종래의 지원병 제도를 폐지하고 1944년부터 징병제를 실시하여 한꺼번에 다수의 조선인 병사를 확보하게 되었다.

내각은 1942년 5월 8일 각의에서, 조선에의 1944년 징병제 시행을 결정하였다. 이것은 「징병법 개정안」으로서 제국의회의 승인을 받아 1943년 8월 1일 시행되었다.

조선 총독부는 2년 후의 징병제 실시까지 어떻게 해서든 조선청년을 황국신민화 해놓지 않으면 안되어 각 면에 청년 특별훈련소를 설립해 강제적으로 징병 예정 연령자를 모집해 일본어, 군사교육, 황민정신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제 1회 징병검사는 1944년 4월 1일부터 8월 20일 까지 실시되어 수험자 총수는 20만 6,057명이었다. 현역병 채용자는 동년 9월 1일부터 1945년 5월 까지 입영하고, 순차전장 등 조선밖의 부대에 배속되었다. 제 1 보충병 채용자도, 이것과 평행히 입영, 배속되었다. 갑종 합격자 약 6만 9천명, 제 1을종 약 6만 2천명 합계, 약 13만 명으로 현역병과 제 1보충병을 합한 수는 거의 이것과 같다고 추정된다. (조선총독부 작성 「제 85회 제국의회 설명자료, 재무국 작용」 1944년 8월,에 의한다.) 또한 재만주 조선인의 징병검사는 관동군에 의해 행해

제약 1만 3천명이 수험하였다.

제 2회 징병검사는 1945년 1월부터 5월에 걸쳐 실시되었다. 그렇지만 1년 6개월 등의 기간, 육군병 지원자 훈련소에서 훈련받은 경우와 달리, 징병제도의 경우엔, 급히 병사를 확보하였기 때문에 일본이 능력이 충분하지 못한 자가 많고, 입영후 전속부대 운송 중에 도망하는 자가 속출했다. 조선총독부, 일본군 당국자들은 전국이 불리하게 전개됨에 따라서 「언제 폭동의 위험이 없다고 한정하지 못한다(조선총독 小磯國昭 「募山」, 772항), 영미와 내통하여 전장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것은 아닌지 ('기밀작전 일지', 1945년 7월 30일, 제 17방 면군) 등등 일본인화가 아직 불충분하다 해서 더 한층 민족성 밀살을 철저히 하게 되고 병영 내에서의 차별도 심각화 되었다. 일본통치자들은 마치 공포에 놀라 쫓기듯이 하여 조선인을 일본인 이상으로 황민화 하려한 것이다.

### 6) 군속

### (1) 국민징용령의 조선에 적용

(1) 국민징용령의 조선에 적용  
1937년 일본은 중일전쟁을 발발시켜 전선을 확대해 갔으나 중국과의 전면적 전쟁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군사 공업력의 확보와 일본군 전투를 가능하게 하는 물자생산, 운반, 병사수송, 군사시설 건설 등의 노동력 확보는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래의 전쟁전개를 예상하면 내지 인력, 물자 뿐만 아니라 식민지의 인적, 물적 자원을 전면적으로 일본의 통제하에 두어, 일본의 「병참기지」로서 편성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렇게 하여 1938년 5월, 국가총동원법이 조선에 적용되어 이것에 근거하여 1939년 10월에는 국민징용령이 시행되어 노동력의 강제적 징용이 법적인 형식으로도 완비되게 되었다.

정용이 법적인 형식으로도 완비되게 되었다.  
한일합병 이래, 일본은 식민지 조선에 대해 근대 공업발전을 저지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합병 이전의 조선에서는 면직물 등의 경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이나 근대공업 자본의 짹이 트기 시작하여 합병전후의 시기를 통해 일본에서 상업자본, 수공업진출에 압박을 받으면서도 민족주의자들의 격려로 경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자본이 성장해 갔다. 그런데 1910년 10월 조선총독부는 「회사령」을 제정하여 회사설립을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회사령」 시행결과 조선인 회사와 일본인 회사의 비율(자본금 합계)은 1911년에는 약 1:1.5였으나 1920년에는 약 1:15.5로 차이가 크게 나게 되었다. (「조선상공업」 1924년에 의한 다.)

한편, 「산미증식계획」 등 1920년대 이후의 수탈적인 농업정책의 전개는 일부에서는 수리설비 개량 등의 성과를 남기긴 하였으나, 전체 생산량은 늘지 않고, 내지에의 이출량만을 증가시켜 조선 농촌은 기아의 피폐상태에 놓이고, 거듭되는 흉작, 기근에 대한 저항력도 없어져 1930년대에는 만성적인 농업공황 상태에 있었다.

농촌의 폐허에 따라 수많은 농민이 토지를 빼앗겨 농업노동자로 전락하거나 혹은 농촌에서 떠나 버렸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까지 민족 공업자본의 발전이 억압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업노동력에 필요한 교육, 훈련을 거치지 않은 상태이고, 원래 농촌노동에 맞는 신체와 행동양식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일본이 국가권력에 의해 이들 노동력을 통제하여 일본 공업자본을 진출시켜 조선을 「병참기지」화 하려해도 그들을 통상의 공장 노동자로서 유치하는 것은 곤란하고, 노동자의 근로의욕이나 창의연구에 근거한 생산은 기대할 수 없었다. 더구나 속현공 수는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일본은 중일전쟁을 더욱 확대시켜 1941년에는 미국, 영국 등을 적으로 하여 전면적인 아시아 태평양전쟁에 돌입하였기 때문에 조선의 「병참기지화」는 말하자면 지상명령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필요성에서도 일본은 조선의 노동력을 강제적으로 징발, 징용하여 노예적 경우와 감독아래에서 강제노동에 복무시켰던 것이다.

## (2) 군속의 징용

군속에 대해서는 1941년 이래 국민 징용령에 근거한 법적 형식으로서 징용이 행해졌다. 또 민간기업이나 탄광에의 강제연행과 같이 「직접모집방식」, 「관의 알선」에 의한 사실상의 징용도 있었다. 어쨌든 노동자 확보실태는 민간 노동자의 강제연행과 다르지 않은 폭력적인 것이었다.

「제 86회 제국의회 설명자료」에 의하면 1944년 9월 말까지 8만 8,241명의 조선인 군요원이 동원되어 그 가운데 국민 징용령 적용에 의한 자는 3만 1,783명이었다고 한다. 이들 가운데는 1941년 이후 해군의 요구에 근거해 남방 토목작업에 송출된 해군작업 애국단원 3만 2,248명, 육군의 요구에 의한 부용감시요원 3,323명 등이 눈에 띄고, 그 파견지역도 내지, 만주, 중국, 남양 등 광범위하였다.

그러나 조선인 군요원의 동원은 1944년 가을 이후에 더욱 중대하였다. 전후 후생성 제2 복원국이 집계한 숫자에 의하면 1941년 이후의 동원 수는 육군 7만 424명, 해군 8만 4,483명, 합계 15만 4,907명에 달하는데 ('재일본 조선인 개황', 1953년). 본 소송에서 밝혀진 대로 당국에 의한 생사확인, 명부관리가 미흡했다고 생각되므로 위의 집계에도 많은 누락이 있다고 추정되어 실제 숫자는 보다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1944년에는 경상북도 일대에서 약 3,700명의 노동자가 불잡혀, 오끼나와에 군부(軍夫)로 보내졌다.

1943년 10월의 「노무강화 대책요강」에 근거해 1944년 9월부터 조선 내에서의 국민 징용령의 전면적 발동이 행해져, 국민 징용령 적용에 의한 장용은 군요원 뿐 아니라民間에의 연행에까지 확대되었다.

군속이란 문관, 고원, 용인의 3계급이 있다. 조선인이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에 징용, 징발에 의해 군속이 된 경우, 대부분은 용인이고, 동남아시아의 포로감시원의 일부가 고원(屬員)이 되는데 그쳤다.

### (3) 조선인 군속징용의 동기, 원인

원래, 일본군에는 전투원 이외의 후방 병참부문 발달이 현저히 뒤떨어졌다. 군대의 작전병력에 대한 병참부대의 병력비는 1941년에 25%였던 것이 1944년에는 20%, 1945년에는 혼토 25%, 기타 20-21%로 오히려 병참부대 비중이 저하되고 있었다. ('중국사변 대동아전쟁간 동원개사').

치중대에는 현저하게 적은 비중밖에 두지 않았고, 육군은 취사군 도입을 일관되게 거부하여 각자가 휴대하는 식기에 의한 취사에 의존하였다. 전장 등의 파견지에서 군대에 필요한 물자는 대부분 현지조달로 하고, 군표남발이나 현지 민가로 부터의 징발, 약탈이 일상적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일본군에게 점령된 지역주 민에게 크나큰 피해를 주었다. 해군의 경우에는 원래 육군 공병대에 해당되는 정식 군대조직이 없어 전장이나 점령지에서는 각 함대마다 설영대(設營隊)를 조직해 수만에 달하는 조선인, 대만인, 노무자를 주력으로 기지, 홍콩, 비행장 등 의 시설 건설, 현지 치안경비 등을 확보하였다(전사총서 「해군설비」 220항). 해군 설영대는 1944년 2월 이후 처음으로 군대화되어 다수의 군속을 배치한 군대로서 조직되었다.

분명히 당시 조선인의 노동력은 공업 노동력으로서는 숙련도가 낮고, 일본인 처럼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체제를 수용하지 못해, 민족적 자립심이 왕성하였으므로 군대안에 묶여 있어도 지휘명령에 따르게 하기란 쉽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반란의 가능성까지 있다고 일본 통치자들은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수의 조선인을 군속으로서 군대 조직안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첫째, 태평양전쟁의 확대와 아시아 각지에서의 저항에 의한 전국의 수령화에 의해 내지 일본인 청장년 노동력을 병사로서 송출하지 않을 수 없어 노동력 부족이 심각해진 내지에서 이 이상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웠던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 전장이나 점령지에서의 시설건설 등의 노동은 적군의 공격이나 현지인의 저항에 부딪히기 때문에 매우 위협이 크고, 민간인의 노동력에 의해서는 수행할 수 없는 부문이었다. 본래 근대 군대에 있어서는 그러한 부문은 시설건설을 위한 병사에 의해 수행되어야만 하지만 일본군은 이 부분이 빈약했기 때문에 군속이라 는 전투원으로서의 훈련을 거치지도 않고 무기도 없는 요원에게 수행시키지 않을 수 없어 결국 그런 위험한 부문은 이른바 1회용이 가능한 조선인, 대만인의 노동력에 근거한 강제노동의 방법으로 확보되었던 것이다.

1945년 봄의 유황도처럼 군속이 병사와 함께 전투에 참가시켜진 적도 있다. 또한 1942년에는 약 3천명의 조선인 청년이 징용되어 타이, 싱가풀, 자바 등에 부용 감시원으로서 파견되고, 일본군에 의한 국제법 위반인 포로학대, 강제노동을 현장에서 실시하는 요원으로 사역되었다. 즉, 일본군인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 '2급 국민'인 조선인 군속을 수족으로 해서 거의 모든 국제범죄를 실행하게 하였다. 조선인 군속은 일본 패전후 연합군 장병이나 억류되었던 주인의 원한을 사는 처지가 되어 억류되었던 것에 대한 보복을 당하여 일부는 전범으로 처형되었다.

일본은 조선인 포로감시원에 대해 전시 국제법을 무시한 잘못된 교육을 실시하고 또 고향에서 분리시켜 점령지에 보내어 절대적인 강제아래 둘에 의해 모든 자학행위의 현장에 서게 하였다.

#### (4) 구속징용정책의 부당성

이렇게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시에 다수의 조선인이 군속으로서 강제적으로 (혹은 속임을 당해) 전장으로 보내져 인간성을 무시한 열악한 의식주 노동환경 속에서 강제노동을 당하고, 무방비 상태에서 적의 습격을 당해 사망하거나 평생

동안 장해를 짊어지게 된 것은 일본의 정책의 필연적인 귀결이다.

분명히, 조선인 군속들은 국민징용령이라는 법적 테두리 속에 우선 합법적으로 징용되고 군속 고용계약에 근거해 노무에 복무하게 된 것이나 그 과정에서의 고용주인 나라측의 수많은 계약위반, 불법행위를 따져보면 전체적으로 국제법상 금지된 노예적 강제노동이며 그러한 정책수행 전체에 의해 조선인 각 가정의 필수 노동력을 빼앗고, 다른 「황민화」 제정책과 더불어 조선인의 문화적 기반을 파괴하고, 그 민족성을 말살하려 하였다.

일본은 무모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조선인을 말하자면 전장에서의 1회 용품인 노동력으로 착취하고, 희생을 강요했던 것이다.

## 7) 군대위안부

### (1) 「여자정신대」

중일전쟁이 전면적으로 확대된 후인 1937년 4월, 나라는 「국민정신총동원 실시요강」을 각료회의를 통해 가결하였다. 이 국민정신 총동원에 의해 여성활동이 장려되어 여성의 전쟁참여가 촉진되었다. 1941년 11월 국민근로보국협회령에 의해 14세 이상 25세 미만의 여자에게 1년에 30일 이내의 국민근로보국대에 의한 협력을 시킬수 있도록 되었다(1943년 6월, 「30일」은 「60일」로, 1944년 11월 「25세 미만」은 「40세 미만」으로 개정되었다.).

1941년 8월, 국민징용령 제 2차 개정에 의해 여성징용은 법적으로 가능해졌으나 강제적인 성격을 띤 여성징용은 회피되고, 자주적 참가라는 허울아래 여성의 근로동원이 실시되었다. 1943년 9월에 17직종에 대한 남자 취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고 여성의 취업하게 되어 이것과 병행하여 정부는 「여자근로동원 촉진에 관한 것」을 결정하고 「여자근로정신대」를 자주적으로 편성시켜, 여성의 거의 대부분을 동원시키려 하였다. 정신대는 1년 내지 2년의 장기에 걸친 동원이었다. 1944년 8월, 여자정신근로령이 공포되어 1년간 정신근로를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있게 되었다.

조선인 여성에 대해서는 국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관계로, 원칙적으로 법을  
적인 강제력을 가진 징용은 행할 수 없었으나 「관알선」이라는 강제력으로 동원하  
였다.

(2) 「여자정신대」라는 이름의 군대위안부

현재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정신대」란 군대위안부를 가리킨다. 식민지 조선에 있어서도 군수공장 등에 동원된 「여자근로정신대」가 존재했는데, 「정신대」라는 이름아래 군대위안부의 착출이 행해진 것에서 「정신대」 즉, 군대위안부라는 현재 한국에서의 인식을 생겨나게 한 것이다. 이것은 조선인 여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무참히 밟은 군대위안부 정책이, 국가총동원, 근로보국, 정신근로를 대의 명분으로 하여 국가에 의해 조직적으로 행해졌음을 말해 준다.

위에 기술한 대로 군대위안부 착출이 가장 가열했던 시기는 「여자정신대」, 「여자애국봉사대」 등의 이름으로 행해졌는데, 정신대의 이름을 가지기 이전부터 조선에 있어서의 군대위안부 착취는 시작되고 있었다.

1910년대부터 조선여성을 일본에 팔아넘겨 매춘강요가 일상적으로 행해졌던 것을 배경으로 하여 군대위안부는 1938년경부터 국·군의 관여하에 조직적으로 착출당해 관리되게 되었다. 그 수는 10만인 정도라 하며 80%가 조선인 여성이었다. 군은 유곽의 주인을 이용하여 전선에서 영업시켰는데, 전선이 확대되자 그 수가 부족하게 되었다. 일본인 여성은 후방의 출정병사의 가족이나 친족이어서 군대위안부로서 착출하게 된다면 일본병사의 사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군은 조선인 여성을 군대위안부로서 적극적으로 착출했던 것이다. 이미 기술한 대로 조선인 남성이 남김없이 동원되는 것과 병행하여 「조선인 여자정신대」, 「여자애국봉사대」 등의 이름으로 조선인 여성이 집단적, 폭력적, 조직적으로 군대위안부로서 착출되었던 것이다.

### (3) 강간과 군대위안부 정책

(3) 정부의 문『기사』에 일본군의 침략지 민중에 대한 폭력적 잔학행위는 극에 달해 일본군 병사가 전선각지에서 강간, 살인을 반복했던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다.

### a. 상해사변

만주 침략후의 1932년 1월 일본군은 만주에서 열국의 눈을 돌리게 하기 위해 상해에서 음모에 의해 거류민 우익분자와 중국관헌을 총돌시켜 동월 28일 일본군과 중국군과의 사이에 전투가 개시되었다. 이 상해사변에 있어 병사에 의한 강간사건이 다발하여 오카무라(岡村寧沈) 중장은 나가사키현 지사에게 군대위안부의 초청을 요청하였다.

의 초청을 요청하였다.  
후의 오카무라 종장의 기록에는 '옛날 전역시대에는 위안부 등은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나 자신은 부끄럽게도 위안부안의 창설자이다. 1932년의 상해사변 때 2,3건의 강간이 발생하였으므로 파견군 참모부장이었던 나는 그 지역 해군을 모방해 나가사키 현 지사에게 요청하여 위안부 단을 초청해 그 후 강간사건이 없어져 기뻐하였다. 현재의 각 병단은 거의 모두 위안부단을 수행하여, 병참의 일 분대가 되어있는 형상이었다.'라고 되어 있다. (이나바 마사오편 岡村寧沈大將資料)

b. 남경대학살

1937년 7월 7일, 노구교(蘆溝橋)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일본과 중국은 전면전 상태로 돌입하였다. 일본은 전쟁의 장기화라는 수령에 빠져 들어가 같은 해 12월 13일 남경을 점령하였다.

월 13일 남경을 점령하였다. 남경으로 진격하던 도중, 그리고 남경 공략과 그 후 수주일에 걸쳐 일본군은 대량의 포로들을 불법적으로 살해했으며, 나아가서는 다수의 일반 민중에 대해서도 간간과 살인 등의 잔혹한 행위를 거듭하였다.

깊은 수령에 빠진 전선에서 이처럼 포악한 군대를 관리하기 위해, 즉 포악한 군대 위안부 정책을 취하게 된 것이 위, 강간, 성병을 예방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군대위안부 정책을 취하게 된 것이다.

#### (4) 계획 사냥, 수송에 있어서 국가와 군부의 관여

군부는 필요한 인원수를 산출해 면사무소 등을 이용해 폭력을 사용하거나, '군인들의 심부름을 한다' 등으로 속여서 10대 후반에서 20대 전반의 조선인 여성들을 끌어모아 수송했다. 조선총독부가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 a. 전 해군 중령 시게무라 미노루(重村實)에 의하면 1942년 5월 해군성 군무국장(軍務局長), 동 병비국장(兵備局長) 으로부터 남서방면 합대 참모장 앞으로 「제 2차 특병요원 진출에 관한 조회」라는 문서가 제출되었다.

「특별요원」이란 해군에서 군대위안부를 가리키는 호칭이다. 동 문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었다.

- 1. 수송선명 및 그 행동예정.....
  - 2. 특별요원 배분.....
  - 3. 소요시설 및 기재.....

가. 숙소..... 나. 침구..... 다. 음식 기타..... 라. 위생.....

4. 경영  
업자들과는 아래와 같이 협정을 맺었음을 감안하고, 각지의 상황에 따라 적당히 협의하여 결정할 것.

## 7. 함대와의 연락

각 부대의 책임자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순수 특별요원 관계는 대장이 주로 그것을 전담한다.

98

대체로 1년간 건강한 상태에서 일한 경우에 부채를 상환할 수 있을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현지 상황에 따라 협정하기로 한다.

五 亂世

그 뒤에는 사관용(전월정 이상을 복설 대수일 정수고 있음), 이사관용 및 공원용(工員用)을 별도로 설치한다. 따라서 사관용은 손실이 없도록 각별히 그 조건을 고려한다.

2. 운영을 합대관리 하에 민영으로 할 것.....

(「문예춘추」, 1955년 12월호)

이 문서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국가와 군부는 군대위안부의 배분, 수송의 단계에서 계획적, 조직적으로 관여하고 있었다. 또한 군대위안부의 인원수에 대해서는 병사 29명 내지 35명당 1인으로 계획되었다고 한다.

b. 전 야마구치(山口)현 노무 보국회의 시모노세키 지부 동원부장인 요시다 키요지(吉田清治)에 의하면 1943년 5월, 서부군 사령부는 규슈와 야마구치현에서 군대위안부 2,000명을 공출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요시다 씨에게는 조선인 위안부 200명이 할당되었기 때문에 그는 제주도에 가서 군대위안부 사냥을 했다. 요시다 씨의 아내가 쓴 일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1. 황국위문 조선인 여자정신대 200명, 나이 18세 이상 30세 미만, 기혼자도 가능, 단, 임신중인자 제외.
  1. 신체건강한 자, 의사의 신체검사, 특히 성병검사를 할 것.
  1. 기간 1년 지원에 의해 생활 가능
  1. 급여, 매달 30엔, 준비금으로 20엔 선불

1. 근무지, 중국 중안방면.

1. 동원지구, 조선 전라남도 제주도

파견일시: 쇼와 18년(1943년) 5월 30일 정오

집합처: 서부군 제 74부대

요시다 씨를 포함한 10명의 소집대원은 시모노세키에서 정기선으로 제주도로 건너갔다. 제주도에 도착하자 먼저 육군부대로 가서 군용트럭 두대를 빌려 중사 이하 10명의 병사가 경비를 담당했다. 목검을 든 병사와 총을 든 병사가 일제히 중사는 "병사들은 일하는 보람을 느끼고 싶어한다."며 끌고온 여자들을 병사들로 하여금 강간하도록 했다.

(요시다 키요지 저, 「나의 전쟁범죄」 하야시 에이다이 저, 「말살된 조선인 강제연행의 기록」)

c. 요시다 씨에 의하면 1944년 4월 육군의 의뢰를 받아 야마구치현 지사가 발표한 동원명령서는 「황국위문 조선인 여자정신대 100명」이라고 되어 있었고, 따라서 그는 군대위안부를 육군병원 잡역부 모집이라고 속여서 시모노세키에서 조선인 여성 100명을 모아 하이난 섬으로 보냈다.

동원명령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육군 XX부대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노무동원을 명함.

쇼와 19년(1944년) 4월 3일.

야마구치 현 지사 인

야마구치 현 노무보국회 시모노세키 지부장 귀하

- 記 -

1. 황국위문 조선인 여자정신대 100명

1. 나이 18세 이상, 35세 미만(기혼자 가, 단 임신부 제외)

1. 신체강건(의사의 신체검사 및 성병검사 후 진단서 요함)

1. 기간 1년(지원에 의해 갱신 가능)

1. 급여 매달 30엔, 준비금 20엔 선불, 숙소, 식량, 의복, 현물 지급.

1. 파견일시 쇼와 19년(1944년) 4월 10일 오후 1시.

1. 집합장소 시모노세키시 호소에마치 시모노세키 세관청사 앞

1. 수송지휘 육군 00부대 총탁님

(吉田清治 저,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인」)

#### (5) 관리에 있어서의 국가와 군부의 관여

군대위안부의 유지, 관리는 군이 맡았다. 군대위안부의 배치는 군이 결정하고 막사도 군이 준비했다. 군대위안소는 군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었다. 軍醫가 군의 명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위안부들에게 성병검사를 했다. 병사들은 군대에서 성병예방을 위한 「돌격일번」이라고 불리는 콘돔을 지급받았다. 군대위안소에는 군이 정한 위안소 규정이 게시되어 있었다. 군대위안부의 식품, 의료품은 군이 조달했으며 나아가 군은 군대위안부에게 감사장을 보내기도 했다.

군이 조달했으며 나아가 군은 군대위안부에게 감사장을 보내기도 했다.

a. 전 군의관이었던 아소 테츠오에 의하면 1938년 1월, 상하이 파견군 제 14 병참병원 외과병동에서 근무하던 그는 「금번 개설될 육군 오락소를 위해 부녀자

백여명의 신체검사를 행할 것」을 명령받고, 군대위안부들의 성병검사를 하였다. 아소씨의 쇼와 14년(1939년) 6월 26일자 「성병의 적극적 예방법」이라는 보고서에는 「지난해 1월, 본관은 상하이 교외에 근무하던 중 명령에 따라 새로이 벽지로 진출할 창부들을 검사하였다. 이때 피검자는 조선 부인 80명, 일본 부인 20여 명으로 조선인 중에서는 성병을 의심할 수 있는 자가 극히 소수임에 반해 일본인은 대부분 현재에는 급성 증상은 없으나 상당히 의심할 부분이 많은 자뿐이었다. 그나이도 20세를 경과하여 40세에 가까운 자도 있었고, 일찍 매춘업을 시작하여 몇 년이나 지난 자 뿐이었다. 조선인들에게는 어리고 처녀인 자가 많았음을 볼때 흥미로운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고 한다. (아소 테츠오 「戰線女人考」)

군의가 군의 명령에 따라 이러한 군대위안부의 성병검사를 맡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이 문서는 「그런데 전장으로 보낼 창부로는 나이 어린 자를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본관이 그 곳에서 검사를 하다가 흔히 보게 되는 예를 들면, 양서혜부에 림질, 가래톳 수술흔적이 있는 성병전염 사실이 있는 자, 닳고 닳은 여자 따위는 과감히 재고하기 바란다. 그것이 황군장병들에 대한 선물로는 대단히 의심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쓰여 있다. 여기에서는 위안부들을 「황군장병에 대한 선물」 「물건」, 즉 성욕처리를 위한 도구로서만 존재했고, 인간으로서의 존재를 말살당했다는 사실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b. 아소씨가 활영한 상하이 교외의 작전로 근처에 있던 군대위안소에 개시된 규정에는

1. 본 위안소에는 육군 군인, 군속(잡부 제외) 이외에는 입장을 불허하며, 입장자는 위안소 외출증을 소지할 것.

1. 입장자는 필히 접수처에서 요금을 지불한 후 입장권 및 콘돔 한개를 받을 것.

1. 입장권을 구입한 자는 지정된 번호의 객실로 들어갈 것. 단 시간은 30분으로 함.

1. 입실과 동시에 입장권을 작부에게 전달할 것.

1. 일이 끝나면 즉시 퇴실할 것.

1. 규정을 지키지 않은 자 및 군기와 풍기를 문란케 하는 자는 퇴장시킴.

1.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 자는 접촉을 금지함.

(東兵站司令部)

라고 되어 있다. 요금, 시간 등 군대위안소에 관한 일들이 군대규율 속에 포함되어 있다. 군이 위안소를 유지, 관리하고, 군이 병사를 군대위안소로 향하게 한 것이다.

c. 1938년 육군 교육총감부가 작성한 「전시복무제요」에는 「성병에 관해서는 적극적 예방법을 강구함을 물론 위안소의 위생 시설을 완비시킴과 동시에 군에서 지정한 이외의 매춘부, 원주민과의 접촉을 근절시킬 필요가 있다.」고 한다.

d. 山 제 3475 부대 내무규정(1944년 12월) 가운데 「군인클럽에 관한 규정」에 도

1. 본 규정은 군인 클럽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2. 본 규정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모두 사단 규정에 준한다.
3. 방비 지구내 군인 클럽은 지역관민에게는 일절 이용불가하며, 또한 군인, 군속은 지역 위안소 이용을 금지함.
4. 방비 지구내 군인 클럽에 관한 사항은 방비대장이 전담하고 그 단속 협조를 행함.

#### (5-8 중략)

9. **業婦의 검사는** 지명 군의관이 10일에 한 번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보를 통해 일반에 통보함. (검사일은 매월 8일, 18일, 28일로 하고 그 시각은 그 때마다 지시) 검사에는 현병이 입회함.

#### (10-14항 중략)

15. 군인 클럽 사용요금은 장교 3엔, 하사관 및 군속 2.5엔, 병사 2엔.
16. 영업시간은 매일 12시부터 24시까지로 하고 숙박은 원칙적으로 금지함. 단 매월 8일은 휴업일로 함.
17. 하사관 이하 클럽 사용자는 규정에서 제시한 허가증을 소지할 것.
18. 장교 이하 클럽의 사용시간은 병사 12-17시, 하사관 17-20시, 장교 20-24시로 함

..... 라고 하고 있고, 군위안소가 군에 의해 유지, 관리되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부칙에서는 「일반적으로 업부에 대한 공유관념을 철저히 하고 점유관념을 금비한다.」고 되어 있으며, 여기에서도 군대위안부는 병사의 공유물인 「물건」이었다.

부칙에는 그 밖에도 「업부는 사용자의 입장장을 잘 이해하고 누구에게도 공평함을 제일로 삼아 사용자로 하여금 멸사봉공하도록 함을 염원해야 한다. 어떠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오도하여 봉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만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일에 임해야 한다.」

「업부는 멋대로 올타리 밖으로 나가 산보를 하거나 막사 또는 작업장 등지로 출입하는 것을 금한다.」

라고 되어 있다. 군대위안부는 외출도 하지 못하고, 감시하에 좁은 방에 갇혀서 매일 몇십명씩 병사들의 성욕처리의 상대가 되어야 했으므로 그 육체는 성병에 걸리기 쉬운 상태였고, 정신적으로는 성욕처리 도구가 되어 버렸다는 굴욕감으로 기책을 받았다.

중국, 동남아시아, 남양제도, 일본 국내 등 일본군대가 존재하는 도처에 군대위안소가 존재했다. 그리고 전황이 악화되어 일본군이 퇴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을 때 군대위안부는 어떤 사람은 버림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군대와 함께 육체를 강요당했으며, 또, 다른 사람은 살해되기도 했다. 군대위안부는 이렇게 소모품 취급을 받았다.

전선 각지에서 군이 군대위안소를 유지, 관리했다는 점, 그것도 각 부대마다 단발적으로 실행된 것이 아니라 군부가 조직적으로 병사들의 성욕처리를 위해 군

대위안부를 끌어모아 관리했다는 점, 군대위안부를 강요받은 여성들의 인간존엄성을 침범하고, 평생 치유되지 않는 고통을 안겨 주었으며, 성병을 전염시켜 건강을 빼앗고도 방치해 버렸다. 그렇게 되면 거추장스럽다고 하여 일고의 가치도 없는 소모품처럼 말살해 버린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다.

#### 3. 보상청구 이유

##### 1) 人道에 대한 죄

(1) 뉴른베르그 재판은 일반적으로는 1945년 11월 20일부터 1946년 10월 1일 까지 열린 국제군사재판을 가리킨다(통칭 IMF). 뉴른베르그 재판의 중요과제는 구축국 특히 나찌국가가 범한 평화에 대한 죄, 전쟁범죄, 인도에 대한 죄가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나찌체제에 의한 살인, 폭력, 고문, 노예화 등에 의해 짓밟혀진 인권과 국제법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특히 뉴른베르그 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인도에 대한 죄가 다루어졌다는 것이다.

IMF조약 제 6조 C항 「인도에 대한 죄」는 「전전 혹은 전후에 모든 민간인에 대해 행해진 살인, 섬멸, 노예화, 추방 및 기타 비인도적 행위 또는 범행지의 국내법에 저촉됨과 그렇지 않음과를 불문하고, 본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범죄의 수행으로서, 혹은 이것에 관련해 행해진 정치적, 인종적, 혹은 종교적 이유에 근거한 저해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례로 들고 있는 「정치적, 인종적 혹은 종교적 이유에 근거한 박해행위」라는 요건에 주의해 보면, 인도에 대한 죄가 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오히려 지배체제가 절멸을 기하고 있는 일정 이념이든 인종적 특성이든 보유자로서의 개인 또는 집단임을 알 수 있다.

이 범죄의 목표방향이 다른 범죄와 전혀 다른 것은 어느 단체 내지 집단, 어느 인종 내지 민족, 종교, 정치 그룹이 속해 있는 인간이면 그것만으로 대상이 되었다는 점이다.

IMF 프랑스 주석 검사 드맨튼이 이 범죄는 「인간의 조건」에 대해 토의되어 질 수 있다고 말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 와이밀 공화국 초기에 법무장관을 지낸 라트프르흐는 생애 나찌즘을 일관하여비판하였는데, 계속 재판에 접했던 만년에 「인도에 대한 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념적 의의를 달고 있다.

「나치스는 인도가 포함하는 3개의 의의 모두에 걸쳐 인도죄를 범했던 것이다. 나치스는 잔혹하고 굴욕적인 의미를 가진 무수한 비인도적 행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폴란드 교양충을 뿐리채 뽑아 버림에 의해 교양이라는 의미에서의 인간성을 의식적으로 파괴하였다. 따라서 우리들은 인간존재에 대한 잔혹행위, 인간의 존엄에 대한 회욕, 인간의 교양에 대한 파괴라는 3형태의 의미에서 인도에 대한 죄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인도에 대한 죄를 이렇게 이해하는 이상, 이것을 전인류에 대한 범죄라고 보는 것이 올바를 것이다.」

(2)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의 행위를 보면, 전술한 대로 폭력과 강탈에 의한 정복이라 할 한일합병조약에 의해 피고국은 조선의 왕과 나라의 위정권을 빼앗고, 「3.1 만세투쟁」과 같은 반항에 대해 가혹한 탄압으로 대응하고 「산미증산운동」이라 하여 쌀과 식량을 빼앗고, 토지, 임야조사라 하여 광대한 토지를 빼앗아 경제적으로 곤궁에 빠져 아시아 대륙침략의 병참기지로서 식량은 물론 군수자원

을 약탈하면서 「황국신민 맹서」와 일장기, 궁성요배, 신사참배 등을 강제하고, 조선어 사용을 금하였으며 고유한 이름까지 일본식으로 바꾸게 하는 등의 민족문화, 민족성 말살을 피했다. 게다가 전쟁체제의 수행을 위해 수많은 젊은 이들을 강제연행하여 노동력으로 하고, 군인, 군속으로서도 강제하였으며 또한 군대위안부로서 젊은 여성을 일본군의 성적 처리도구로 함에 의해 「씨」를 말리려고 기획 했다. 이것은 분명히 민족말살정책이라 할 수 있다. 조선 사람들은 조선 사람인 이유만으로 이러한 박해를 받았던 것이다. 이 행위는 전술한 IMF 조약 제 6조 C항이 규정하는 「모든 민간인에 대해 행해진 살인, 노예화, 추방 및 기타 비인도적 행위」이며 또 「범행지 국내법에 저촉되든 아니든 간에 범죄의 수행으로서 혹은 이것에 관련해 행해진 정치적 인종적 이유에 근거한 박해행위」에 명백히 해당된다.

(3) 조선인 군인, 군속에 대한 행위가 인도죄라는 것은, 분명하나 여기에서는 특히 조선인 군대위안부에 대한 행위에 대해 기술하겠다.

10만인 혹은 20만인에 달하는 조선 여성들을 군대위안부로 강제하고 전후에는 그대로 방치한 일본군의 행위는 인도죄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1) 여자들은 전장에서 위안부로 죄여지기 위해 계획적, 조직적, 강제적으로 혹은 속임에 의해 고향에서 데려다 놓고, 그리고 절대로 도망칠 수 없는 전장 등에서 군에 의해 위안부로서 일할 것을 강요받았으며, 더구나 군은 폐전통보를 조선인 위안부들에게 하지 않고 버려두었다. 여성들을 연행해 갈 때 위안소의 유지, 관리 등에 관해 군, 국은 전면적으로 관여하고 있었던 것이다.

2) 군대위안부들은 명분상은 병사들의 「전의 고양」을 위해, 가장 직접적으로는 병사들의 불평불만의 「폭발」 예방을 위해, 또 「성병예방」, 「강간예방」을 위해 「황군병사들에게 주어진 선물」이었다. 그리고 군대위안부를 이용해 황군병사를 관리하는 체제이기도 했다. 군대위안부들은 물품사용 취급을 당했기 때문에 전선으로 수송될 때에는 「인간 1명」을 「탄환 1박스」로 서류가 작성되었다. 군사물자로서 군의 수송선 등으로 운반되었다.

아소테츠오 군의관은 앞의 의견서에서 「군용 특수 위안소는 폐락의 장소가 아닌 위생적인 공중변소였으므로.....」라고 까지 말하고 있다.

그녀들은 인간아닌 공중변소 취급을 받았다. 경우에 따라서는 100명이나 되는 일본군을 상대해야 하는 아무렇게나 취급되는 소모품이었다.

조선민족은 이조 500년을 통해 유교문화가 철저하여 여성에게 있어서의 정조는 무엇보다도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정조관념은 민족의 궁지와 자부심의 중핵의 하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은 군에 의해 조직적, 계획적으로 윤간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인간취급을 받지 못했던 것이다. 즉 10만에서 20만에 이르는 조선인 여성들의 인격, 인간성 그리고 조선 민족의 궁지와 자존심 그 자체가 폭력. 그것도 일상적인 장기에 걸친 폭력에 의해 현저하게 침해되었던 것이다.

3) 조선인 위안부들은 성과 민족이라는 이중학대를 받았다. 결국 성적 학대와 민족적 학대를 받았다는 말이 된다. 그리고 당시는 「황민화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어 「내선일체」 「一觀同仁」을 주창해, 조선인을 황민화, 일본인화, 동화 시킴에 의해 민족을 말살하려는 정책을 떴다. 군이나 나라의 일련의 행위는 인간존재에 대한 잔학행위이며, 인간존엄에 대한 모독이며 인간의 교양에 대한 파괴

행위임이 명백하다. 특히, 性이라는 것이 인간의 본질에 있어 중요하며, 인격 등 의 인간성에 직결하는 것에서, 여성은 「물건」 취급한 군이나 나라의 정책은 여성 차별의 극치이며 또 「인도죄」에 해당된다고 할 수 밖에 없다.

(4) IMF조례 6조 C항의 「인도에 대한 죄」의 견해는 확립된 국제관습법이 되어 있다. 인도에 대한 죄에 의해 형사벌을 과할 수 있기 때문에 민사상 보상청구를 인정해야 마땅하다.

인도에 대한 죄는 확립된 국제관습법이므로, 그대로 국내법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원고 등은 나라가 「인도에 대한 죄」에 해당되어 나라를 상대로 손해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 2) 원상회복으로서의 보상청구

(1) 1910년 한일합병에 의해 조선은 일본의 영토가 되고 조선인은 일본신민으로서 일본국적을 가지게 되어 조선인 군인, 군속 및 군대 위안부들은 각기 강제적으로 연행되었다.

(2) 1943년 카이로선언은 「전기의 3대국(미국, 영국 및 중화민국)은, 조선인 민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곧 조선을 자유독립시킬 것을 결의한다.」라는 것이고, 1945년 포츠담 선언 제 8항 전단은 「카이로선언 조항은 이행되어야만 한다.」라고 규정하여, 일본은 그해 8월 15일 이것을 수락하여 무조건 항복하였다. 게다가 1951년 9월 8일, 일본은 연합군과의 사이에서 평화조약을 체결한(1952년 4월 28일 발효), 22(a)항은 「일본국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여, 제주도, 거문도 및 올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放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연합군은 전쟁종결에 있어 카이로선언에서 조선인민이 「노예상태」에 있음을 인식하여 여기에 유의하여 「조선을 자유독립시킬」 것을 결의하여 이것을 포츠담 선언에 의해 일본에 대해 그 이행을 요구하였다. 즉, 연합군은 조선의 독립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1910년의 한일 합방으로 시작된 일본에 의한 조선반도의 식민지 지배를 종료시키고, 조선인의 「노예상태」로 부터의 회복을 당연한 전제로, 일본의 조선반도에 대한 침략의 결과를 침략전의 상태로 돌려 놓는다는 원상회복을 기도하였다. 그리고 일본은 이것을 수락하였고, 평화조약 2조(a)항은 일본이 원상회복 의무를 다할 것을 확인한 것이다.

(3) 그렇다고 하면, 조선인에 대한 침략의 결과로서의 「노예상태」로 부터의 회복이란 그 후 일본이 취한 대인주권의 방기라는 형식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도 조선인을 「노예상태」에서 회복시킬 의미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고향에서 외지로 강제연행되어 아직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귀환을 하도록 하는 것이 「노예상태」에서의 회복이며, 군인, 군속으로서 일본을 위해 희생하여 사망, 부상한 자에 대해서는 그 물적, 정신적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노예상태」로 부터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며, 군대위안부에 대해서는 일본군 병사의 성욕 처리도구가 된 것 자체가 「노예」 이외의 그 무엇이 아닌,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보상이 그들에게 있어서의 「노예상태」의 회복이다. 왜냐하면 해당 조선인이 현재 군인, 군속 또는 군대위안부의 위치가 아니라도 군인, 군속, 군대 위안부로서 받은 정신적 육체적 침해결과가 보상되지 않는 한 강제연행에 의한 침략결과로서의 「노예상태」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4) 따라서 일본은 포츠담 선언 및 평화조약에 근거해 조선인의 「노예상태」로 부터의 회복을 이행해야 할 의무로서 조선인 군인, 군속 및 유족들과 군대위안부에 대해 그 물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 보상해야 할 의무를 가져야 한다.

### 3) 군인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나라의 의무

(1) 원고 및 유족이 원고로 되어 있는 그 원고들의 아버지(이하 원고라 한다.)들 가운데, 징병된 자에 대해서는 당시 모두 구 일본제국 군인이었으며 각각 소속부대의 군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래서 원고 등 군인은 엄한 군율아래 놓여져 상관의 명령에 절대복종 무(육군형법 2편 2장, 4장 57조 내지 59조)를 가지고, 생명의 위험이 있으면 위험을 무릅쓰고 전력을 다해 나라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증진한다」는 것을 포함한 충실의무를 졌다. 이것에 대해 나라는 원고들 군인에 대해 급여 지불의무를 짐과(육군급여령) 함께, 군인이 군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의 사망, 부상에 대해 보상의무를 진다.

(2) 그래서 현행법에서는 나라와 국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법률관계에 대해 주요한 의무로서 공무원은 직무에 전념해야 할 의무(국가공무원법 1조 1항 전단, 자위대법 60조 1항 등)를 가지는 것이 명문상 정해져 있다. 이와 동시에 국가는 공무원에 대해 위의 중요한 의무 외에 「국가가 공무수행을 위해 설치해야 할 장소, 시설 혹은 기구 등의 설치관리 또는 공무원이 국가 혹은 상사의 지시를 수행하는 공무관리에 있어서 공무원의 생명 및 건강을 위험에서 보호하도록 배려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1975. 2. 25 三小判). 그리고 국가가 이와 같이 위의 주요 업무 외에 부수적인 의무도 가지고 있다고 풀이되는 것은 공무원이 위와 같은 주요업무를 「안심하고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하기 때문이다.」 환연하면 위의 의무를 다하는 것에 대응하여 인정될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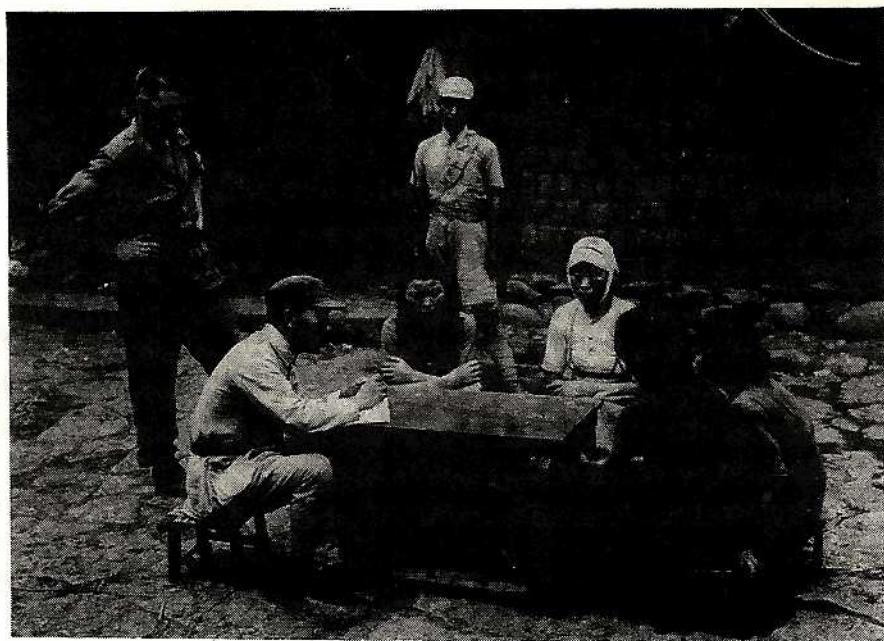
나라에 대해 위와같은 부수적인 의무를 인정하는 근거가 상술한 대로인 이상, 현행법에 비해 보다 포괄적이면서 절대적인 명령 복종관계에 있는 구헌법 하의 국가와 군인과의 관계에 대해 국가가 포괄적 절대적인 지위명령권에 대응하는 곳의 부수 의무(이하 「보호의무」라 한다.)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당연하다. 구 헌법하에 있어서는 나라는 이러한 의무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의무를 다했다 하더라도 또 다시 발생하게 되는 공무재해에 대처하기 위해」 은급법을 정해 재해보상제도를 확립하였던 것이다. 그런데도 국가는 그 의무이행을 계율리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의무위반 사태를 만들어 내었다.

### 4) 군속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국가의 의무

(1) 원고들 가운데 육군 혹은 해군 군속으로서 나라에 고용된 자는 조국에서의 강제연행을 당해 그 의무에 종사하였다. 군속은 국가에 고용되어 군대의 관리하에서 일정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그 의무는 군대의 전략, 전투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어 군인과 다르고 어디까지나 비전투원이다. 단 원고 등의 경력으로도 기재되어 있듯이 그 군속으로서의 조선인 노동자는 국가총동원 체제 아래에서 국가의 여러 기관에 의해 강제연행되어 그 배속장소에 배치되어 엄중히 감시받고 강제노동을 당한 것이며 모든 피고국의 전쟁목적 수행을 위해 국가에 대한 노동의무를 가지게 된 것으로 피고국과의 관계는 고용관계 그 자체라 해야 할 것이다.

(2) 고용계약에 있어서는 사용자는 피고용자의 생명전체의 안전에 배려해 주어야 할 의무(이하 「안전배려의무」라 한다.)를 지므로 국가는 군속이 그 직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할 의무를 가졌다. 그런데도 국가는 원고등의 직무내용으로 보아 본래 후방 병참기지에서 근무시켜야 함에도 制海權, 制空權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지 않은 전투지역에서 근무하게 하고 그 결과 상대국의 공격으로 원고 등을 전사, 부상시켰으니 국가가 안전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 또한 어쩔수 없는 상황에 의해 군속을 전투지역에서 근무시켜야 할 경우는 상대국으로부터의 공격에 의한 사상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국가가 군속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의 범위정도는 한층 높아서 위험성이 예상될 경우는 곧 군속을 방호, 피난시키는 등의 의무를 지는 것이다. 국가는 위와 같이 원고 등 군속관계에 있었던 자에 대해 안전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나 예를 들어 군속계약이 그 성질상 이러한 사태를 용인하였다고 하면 군속은 계약관계에 있으므로 본래대로 전사 부상하게 됨이 당연히 예측되는 전투지역에서 근무하게 한 것은 전사부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안전배려 의무의 대체대상으로서 그 손실을 보전(충당)하는 것을 계약내용으로 한 것이라 해야 한다. 그래서 국가는 군속이 부상 등을 당한 경우에는 그 부상에 의해 발생하는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보상할 의무를 가지고, 군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군속이 부양해야 할 유족들에 대해 그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보상할 의무를 가진다.

(3) 또 국가는 징용이라는 하나의 행정처분에 있어 미리 예정되어 있던 징용기간이 끝났을 때 혹은 그 기간 만료전에 징용목적인 전쟁 그 자체가 종결되었을 때는 징용을 해제하고 통상은 귀향 여비 등을 지급해 피징용자의 귀환을 책임진다(적어도 원호한다)는 의무를 원래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 등 가운데는 전쟁 종결후에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던 자도 있었다. 이들에 대해서 국가는 최저한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았다. 게다가 군속관계에 있었던 자 가운데에는 임금의 일부를 강제적으로 저금시켜 혹은 고향의 집 가족에게 송금한다고 하면서 송금하지 않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지불 받은 자도 있다. 이들 지불되지 않은 임금을 현재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지불해야 할 채무를 나라는 지고 있다.



▲ 한국인 종군위안부  
버마 미군포로수용소에서 조사받고 있는

## 5) 신의칙(信義則)상의 의무

(1) 최고 재판소에서 자위대원이 자위대 내의 차량정비 중 동료가 운전하는 대형차량에 칼려 즉사한 사안에 대해 국가는 「공무원의 생명 및 건강을 위험으로 부터 보호하려는 배려를 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하고, 이 「안전배려 의무는 어느 법률관계에 근거해 특별한 사회적 접촉관계에 들어간 당사자 간에 있어서 해당 법률관계의 부수의무로서 당사자의 일방 또는 상대방에 대해 신의칙상 지는 의무로서 일단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국가와 공무원과의 사이에 있어서도 따로 해석해야 할 논거는 없으며」라고 판시되어 있다.(1975. 2. 25. 三小判)

(2) 즉 어느 법률관계에 근거해 특별한 사회적 법률관계에 들어간 당사자 간에 있어서는 당사자 한쪽 또는 상대방에 대해 해당 법률관계의 본래적 의무에 신의칙상 부수의무를 진다라는 것이다. 고용에 있어서 사용자의 보호의무를 비롯해 특히 채권법에 있어서의 신의칙 지배는 유력한 학설에 있어 고창되어 있던 점이며, 위의 판결은 신의칙상 지는 의무의 존재를 인정한 것으로서 그 의의는 매우 크다.

(3) 그런데 강제연행된 조선인 군인, 군속 및 군대위안부와 국가와의 관계는 해당조선인의 고향으로부터의 강제연행으로 시작되어 배치되고, 고향에 돌아갈 수 없게 하고, 이동의 자유를 주지 않는 이러한 관계는 일본의 패전시까지 계속되어 이들 조선인이 나라로부터 얻은 것은 극히 적었다.

「채권법은 신의칙에 의해 지배된다. 계약관계 성립에 있어서도 채권관계 존존증에도 또 소멸후에도, 일반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와의 관계는 신의칙을 최고 이념으로서 규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代妻榮 「채권총론」 14항) 이것은 강제연행된 원고 조선인과 국가와의 사이에 있어서도 말할 수 있고, 국가가 원고에 대해 그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보상하는 것은 신의칙상 의무로서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4) 특히 원고 군대위안부는 국가와의 사이의 직접 고용관계는 아니나 이미 기술한 대로 강제연행, 배치 및 관리 등에 국가, 군이 계획적,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천황이 악화함에 이르러서는 그냥 방치해 두거나 옥쇄시키거나 혹은 살해하거나 실행한 것과 같이 되어 정말로 국가가 신의칙에 근거한 안전배려 의무를 계율리 한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다.

## 6) 조리상의 의무

### (1) 일본인 군인, 군속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경위

a. 戰前, 군인의 전사, 부상으로 인한 유족에 대해서는 舊은급법에 의해 일반 공무원의 은급보다도 수급자격 재직 최단년 한도가 단축되고 또 지급금액이 증액되는 등 우대된 조건으로 국가에 의해 두터운 원호가 있었다. 이것은 戰前에는 국민에게 병역의 의무가 과해져 있었던 반면 직무의 성격상 군인에게는 상시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이 따르며 천황과 국가를 위해 그러한 위험에 몸을 던져, 사망, 부상한 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원호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에서였다.

이것에 대해 군의 고용인인 군속에 대해서는 군인과 같은 후한 원호제도가 없었는데 일본 근무자에 대해서는 「육군군속 전재 구조규정」, 「해군공제조합규칙」 등에 의해 전쟁부상, 전사에 대해 연금을 지급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b. 그러나 일본의 패전에 의해 연합국군 최고지령부(GHQ)는 위와 같은 군인 은급제도가 군인생활에 매력을 주므로 일본의 군국주의 침략정책의 큰 근원이 된, 세계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악랄한 것으로서 군인 은급제도의 폐지를 제시하여 「은급법의 특례에 관한 건」(1946년 2월 1일 칙령 제 68호)에 의해 군인 은급제도는 정지, 제한되게 되었다.

c. 이러한 군인은급제도는 정지, 제한된 것인데 그 당시부터 국가가 나라에 봄을 바쳐 희생한 자에 대해 뭔가 원호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논의가 끊이지 않았다. 그 후 평화조약에 의한 일본독립이 논의되게 된 1951년에 이르러 전상병자, 전몰자 유족 등의 처우문제를 급속히 해결하기 위한 결정이 행해져 군인은급을 부활시켜야 할지 그렇지 않으면 사회보장적 색채를 가미한 원호대책을 강구해야 할지의 논의끝에 군인은급 제도의 부활을 보류시키고 다음해 1952년 3월 전상병자 전몰자 유족 등 원호법안(이하 「원호법안」이라 한다.)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원호의 성격과 대상에 대해 다음과같이 확인, 수정하였다.

원호법안의 원호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들 전상병자 전몰자 유족들에 대해, 국가보상 관념에 입각해 이들을 원호한다」라는 제안이유 설명, 吉武惠市 후생정관의 「이번 원호는 물론 국가로서 국가에 목숨을 바친 분의 유족에 대해 의무를 다하고 있고, 이것은 단지 국가가 은혜적으로 구호를 뻗쳐야 한다고 생각지 않는다. 물론 국가보상면에서 원호로 나오는 것으로」라는 답변, 게다가 수급자와 자산조사, 수입조사를 행하므로 원호가 단순한 국가부조가 아님을 확인하였으며, 중의원에서 원호법안 제 1조에 「국가보상 정신에 근거해」라는 문언을 더할 목적의 수정이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원호대상에 대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한 확대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종전 은급법에 의한 보상을 받은 군인, 문관은 물론, 널리 공무 또는 공무에 준하는 사유에 의해 부상하거나 또는 사망한 자를 원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전자 근무의 군속도 원호의 대상으로 포함시킨 외에 국가총동원법에 근거한 피징용자에게도 조위금을 지급하게 되어 유족연금 및 조위금이 지급되는 유족의 범위도 확대되게 되었다.

이러한 심의 수정결과, 그 해 4월 25일, 군인, 군속의 공무상 부상 혹은 질병 또는 이들의 유족을 원호할 목적으로 전상병자 전몰자 유족 등 원호법(1952년 4월 30일 법률 제 127호 이하 「원호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다.

d. 제정시의 원호법의 원호대상 및 내용은 군인, 군속이었던 자가 그 재직기간 내에 공무상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은급법 별표에 정한 정도에 따라 장해연금(24,000 내지 90,000엔)을 지급하고 또 수술, 의수, 의속 등의 更正의료 등의 지급을 하고, 유족에 대해서는 유족연금(배우자에겐 만엔, 기타 유족에겐 5,000엔), 조위금(전몰자 유족에겐 5만엔, 군속 및 유족에겐 3만엔)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제정시인 1952년도의 유족연금 결산액은 172억 5천2백4십3만 7천원의 세출예산에 대해 132억 2천2백만 엔이 지불되었다.

다음해인 1953년 구군인은급법 부활에 의해 그 적용을 받는 자는 원호법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원호법은 매년 개정되어 지급되는 연금 등이 증액되고 원호 대상도 확대되어 갔다. 1990년도엔 장해연금 대상자는 5,061명으로 공무상에 대해서는 1명당 81만 5천엔 (제 5관중)내지 823만 4천 8백엔(특별정증)이 지급되고 유족연금 대상자는 군인, 군속 및 준군속의 유족 합해 7만 7,971명으로 공무

항에 대해 선순위자는 164만 5천 4백엔, 후순위자는 5만 4천엔으로 되어 있다.

e. 1953년에 구 구인은급제도가 부활되어 (1953년 8월 1일 법률 제 155호) 구군인, 군속 및 그 유족에 대한 은급, 공무상해에 의한 증가은급, 부상연금 등이 지급되게 되었다. 은급법도 매년 개정되어 지급되는 연금액의 증액은 물론 전 범자로 구금된 기간을 재직년수로 통산할 수 있게 하거나(1955년 법률 제 143호, 1971년 법률 제 81호, 1973년 법률 제 60호 등), 단기 재직자에 대한 일시은급 지급 등 적용대상이 확대되었다. 그리고 1991년도 예산에 은급관계 비중, 문관 등 은급비로서 1천 47억엔, 구 군인 유족 등 은급비로서 1조 5천 6백 8억 엔, 은급지급 사무소비 81억엔, 원호법에 의한 유족연금 지급, 전상병자 특별 원호법에 의한 요양금부 등에 필요한 경비로서 1천 3백 4십 7억엔의 실제 합계 1조 8천 83 억 3천 7백 9십만 엔이 계산되어 약 195만명이 보상의 대상이 되었다.

f. 해외에서의 전사자 유골수집에 있어서도, 일본은 1953년 이후 국비로 유골 수집단을 구성, 파견하여 해외 전사자 약 240만 명 중 1991년 2월까지 약 120만명의 유골을 수집하고 앞으로도 유골수집을 계속할 방침이다. 또, 위령에 대해 서도 1970년 이후 주요 전역마다 전몰자 위령비를 건립하고 있고, 지금까지 유황도 등 11개소에 국비로 위령비를 건립했다. 1976년부터는 주요 전적 및 유골수집을 할 수 없는 해상 전몰자를 위령하기 위해서 국비로 유족을 주체로 한 위령순례를 실시하고 있다.

#### (2) 조선인 군인, 군속에 대한 전후처리 실태

a. 위에서처럼 전후 일본은 여러가지 법률을 제정하여 일본인 군인, 군속 및 그 유족, 피징용자, 원폭피해자 등의 전쟁 희생자에 대해 장애연금, 유족연금, 조의금 지급, 경정의료 급부, 전몰자 유골수집, 위령비 건립, 서훈 등등 매우 후한 조치를 취했다.

b. 그러나 그러한 후한 원조조치는 모두 이른바 협통이 일본인 전쟁 희생자에 대한 것이고 조선인을 비롯한 이른바 구식민지 출신자에 대해서 1951년 9월 8일의 평화조약 체결(1952. 4. 28 발효)에 따라 1952. 4. 19 법무부의 민사갑 제 438호 민사국장 통달 「평화조약에 따른 조선인, 대만인 등에 관한 국적 및 호적 사무처리에 대해」에 의해 「조선 및 대만은 조약발효일로부터 일본의 영토로부터 분리됨에 따라 조선인 및 대만인은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을 포함해 모두 일본 국적을 상실한다.」 이후 조선인을 완전한 외국인으로서 취급하여 원호조치에서 제외시켰던 것이다.

c. 전사자 유골수집, 위령에 대해서도 일본인 전사자 유골수집, 위령과 비교해 조선인 등 구식민지 출신자의 유골수집, 위령은 전혀 행해지지 않았다.

d. 원호법, 은급법을 비롯한 전쟁 희생자에 대한 원호 입법의 성격은 그 입법 이유에서도 명확히 알 수 있듯이 단순한 사회보장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자에 대한 「국가 보상정신」에 근거한 것이다. 더구나 이들 원호조치는 예산이 허락하는 한 확대해야만 한다는 요청으로 실제 일본인에 관한 한 원호조치 확대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조선인도 일본인이라는 것을 이유로 약 24만 명의 조선인이 군인, 군속으로서 일본을 위해 생명을 걸고 싸웠고 결국에는 전사, 부상당하였다. 또 일본은 10-20만 명의 조선여성을 군대위안부로 강제로 연행하여 병사의

성욕처리의 도구로써 굴욕적인 취급을 하면서 전후에는 그들의 일본국적을 일방적으로 뺏아 일본인이 아닌 것으로 하여 원호조치에서 제외시켰던 것이다.

(3) 이상과 같이, 국가는 국가보상의 관점에서 원호법을 공포, 시행하여 장애연금이나 장애 일시금에 의한 원호를 하는 것으로 하고, 또한 군인은급을 부활시켰는데, 동시에 국적 조항, 호적조항을 설치해 원고를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방지하였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 국적 조항, 호적 조항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보상이 단순히 은혜로서가 아닌 정의, 공평의 견지에서 받은 희생에 대한 조절로서 인정되었던 것이고, 정의, 공평 원칙이 헌법상 원칙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한다면 보상에 관한 명문규정이 빠져있기 때문이라 하여 곧 보상이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법의 결함을 조리로 보충하고 정의, 공평 이념을 관철시키는 것이 헌법상 원에 합치된다.

하물며, 원고가 군인, 군속 또는 군대위안부로 종사했던 전쟁은 원고의 조국을 식민지로 합병한 당시의 일본에 의해 행해진 것이며 아시아에 대한 침략전쟁이고 원고는 강제적으로 끌려가 어쩔수 없이 종사하게 된 것이다. 원고 군인에게 있어서는 군대내 특히, 내무반에 불합리한 대우, 폭행을 당하면서 불합리한 명령에 복종하는 식으로 하여 철저하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어 일본인 이상으로 「황민화」하려 하였으며 그렇게 한 끝에 원고의 조국을 위해서도 아닌 전쟁부상자가 되어버린 것이다. 또 원고 군속에게 있어서는 적군의 공격이나 현지군 저항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에 매우 위협이 많았고, 민간인의 노동력에 의해 수행할 수 없는 전장에 강제적으로(혹은 속임을 당해) 보내져 인간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열악한 의식주 노동환경 아래서 도망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로 강제노동을 당하고, 무방비 상태로 적의 공습을 받아 사망하거나 살아가는 데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

게다가 원고 군대위안부에 이르러서는 국가, 군의 계획적, 적극적 관여 아래 폭력적으로 포획되거나 속임을 당해 일본군인의 위험한 전투지역에 까지 보내어 성욕처리의 도구로서만 관리되고 인간으로서의 존재를 말살해 소모품으로 취급되고 전황이 악화하면 방기되고 죽임을 당하거나 하여 이러한 비인간적 취급에 대해 아무런 보상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의공평의 견지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으며, 조리상 그 보상청구는 인정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이들 원고들이 입은 생명, 신체의 자유에 관한 손실은 일본 민족인 「국민」이 수인하지 않으면 안되는 손실과는 다른 특별 희생인 것이다. 이러한 특별손실에 대한 보상청구를 입법 결함을 이유로 배소하는 것은, 정의공평의 원리에 아주 반하는 것으로 단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조리상으로 보아도 궁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 4. 보상금액

이상과 같이 각 원고가 받은 민족적 박해에 의한 고통과 괴로움은 측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민족적 박해로서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가 되어 토지와 식량을 빼앗아 곤궁한 생활을 하게 하였고 민족문화와 언어를 빼앗아 황민화교육을 강요하고 궁지에 찬 한 민족의 성을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게 하고 나중에 가서는

일본의 침략전쟁이라는 원고 측에서 보면 타민족의 '부정의'한 싸움에 종사하기를 강요받았던 것이다. 그리고 이 전쟁으로 사망하고, 다치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망신창이가 되었는데, 전후에 일본은 자국민 만을 생각하고 원고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성의도 보이지 않았다. 그 때문에 원고 등은 전후에도 경제적 곤궁에 빠져 가혹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피고국에 의해 받은 원고 등의 이러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위로하기 위해 금전적인 명가는 매우 곤란하지만, 그 보상을 위해서는 금 2천만엔을 넘는다.

### 5. 본 소 제기의 계기

본 건 소송에 있어서 원고 등이 요구하는 보상청구 내용에 대해 피고국은 다루어서는 안되며, 또 다룰 수가 없는 것이다. 즉 카이로 선언은 '앞의 3대국은, 조선인민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곧 조선을 자주독립 시킨다는 결정을 한다.'라고 성명하고 이것을 받아 포츠담선언은, '카이로 선언의 조항은 이행되어야만 한다.'하여 일본의 아시아에 대한 침략의 원상회복 책임을 요구하였다. 이 포츠담선언을 1945년 8월 15일 피고국이 수락한 것이다. 이것에 의해 피고국은 '조선인민'을 '노예상태'에서 원상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국가로서 세계에 공약한 것이다. 이것이 일본으로서의 전후의 출발점이다. 또한, 전후 제정된 일본헌법은 이것을 받아 전문에서 '전제와 예속, 압박과 편협을 지상에서 영원히 제거'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일본헌법에서 피고국은 군국주의 시대의 '부정의'인 '전제와 예속, 압박과 편협'의 행위에 의한 피해 즉 '인도죄'에 해당하는 피해에 대해 반성, 사죄하며 동시에 피고의 회복(보상)의무 이행을 다할 것을 선언한 것이다.

따라서 전후 일본의 출발점인 포츠담 선언 수락부터 피고국은 본 건 원고 등에 대해 보상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는 이것을 인정하고 있어 본건 소송에서 피고국은 이것으로 다룰 수가 없다. 그렇지만 피고국은 전후 스스로 책임을 가지고 이행하지 않고 원고 등의 피해를 그대로 방치한 것은 새로운 권리침해라고 해야 할 '부정의'였다. 이 이중의 '부정의'에 의해 원고 등의 피해와 고통은 설 수 없었다. 원고 등은 한국의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회'의 회원이며 이러한 무수한 피해자의 대표적 존재로서 원고가 되었다. 이들 원고 등의 '한'에 대해 일본 정부는 조급한 대책을 취하여야만 한다.

이 점에서 1990년 5월 한국의 노태우 대통령 방문 일시에, 천황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초래된 이 불행한 시기에, 귀국의 사람들이 겪었던 고통을 생각하면 통석의 뉘를 금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였고, 해부수상(당시)도 '과거 한 때, 조선반도의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행위에 의해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슬픔을 체험한 것에 대해 김허허 반성하고 솔직하게 사과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발언했다. 즉 여기서도 피고국이 과거에 원고 등에게 저지른 '부정의'에 대해서는 이것을 인정해 사죄한 것이다.

이들 피고국의 대응이 진정한 마음에서라면 피고국은 본건 소송의 청구 원인은 이것을 승락하여 조기에 보상이 실현되도록 성실한 대응을 보여야 할 것이

다. 전후 이미 46년이 지나고 원고들 가운데 생존피고자는 이미 노령이다. 한시라도 빨리 근본적인 해결이 실현될 것을 바라고 본소에 언급한 것이다.

### 원고의 경력

#### 1. 원고 A

원고는 1927년 3월 15일에 한국 포항군에서 부모와 10세 연상인 오빠 밑에 태어났다. (식민지시대, 여성들은 국민등록을 안했던 관계로 호적상의 생년 등을 정확하지 않다. 따라서 원고 A의 출생일은 호적상으로는 1922년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정확하지 않다.)

집은 자작종이었으며 보리밭을 경작했다.

1942년 봄, 원고 A에 대한 징용통지가 집에 도착했는데, 원고는 그 징용연행을 원치 않았고, 三中井백화점에 부산에서 처음으로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졌다하여 보러 가려고 혼자서 집을 나왔다.

부산 영도다리에 놀러 갔다 돌아오는 도중 부산역 가까이의 골목에서 일본인과 조선인, 두 사람의 남자를 만났다.

그 두사람이 '아가씨 돈벌려 일본 안갈래? 구라시키에 군복을 만드는 공장에 가면 돈도 벌수 있고 미싱도 살 수 있어'라고 말했다. 원고가 불안해져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해도 돌려 보내주지 않았으며, 원고의 자유는 그 때부터 없어졌다.

그리고 히로시마에 끌려갔다. 히로시마에는 벚꽃이 피어 있었다. 수일 후, 군의 수송선에 태워져서 군인과 함께 야전병원으로 옮겼다.

그 후 원고는 두명의 조선인 여성과 함께 마을에서 떨어진 교회에 끌려갔다. 그 교회 안은 판자로 칸막이가 되어 있어 각각의 칸 앞에 각각의 여자 사진이 걸려 있었다. 모두 20명 정도의 여자가 있었다. 일본어로 설명을 들었지만 뭐가 뭔지 잘 몰랐다. 다른 여자가 성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며 '너도 해라'라고 명령을 받았다. 원고는 싫다고 거부했고, 얻어 맞았다. 라바울의 밀림 속이었으므로 길도 몰랐고 도망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 한 상태였다. 원고는 그 후로 많은 군인들과의 위안부 역할을 강요받았다.

원고는 자살을 생각하고 강에 가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강에 가보니 수많은 악어가 물려와 너무나도 무서운 나머지 죽을 수가 없었다. 지옥과도 같은 나날이었다.

성병예방과 피임을 위해 키니네라는 노란 알약이 군으로부터 매일 지급되었다. 식료나 의약품은 군에서 지급되었다.

또한 원고는 군표도 일본엔도 일체 받은바 없다. 원고가 당시 만난 것은 군인들 뿐이었으며 민간인과는 한번도 만난 일이 없었다. 민간인이란 단지 맑은 날 멀리 보이는 현지 사람 뿐으로 일체 접촉이 없었다.

일본군인들은 부대별로 순서를 정해서, 르밀듯이 아침부터 트럭을 타고 왔다. 원고는 담요 한장을 칸 방에서 하루에 평균 10명을 상대했으며 많을 때에는 15명이 넘는 날도 있었다. 어떤 때에는 5-6대의 트럭이 온 일도 있었다.

그리고 공습이 있게되면 성행위는 중단했고 일본인과 함께 참호에 숨거나 트럭으로 도망치는 일이 찾았다.

그 후 고구마 한 두 개가 한 번의 식사에 할당되었다. 어느 날 일본군인들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원고는 다른 여성들과 함께 과일이나 고구마를 키워 그것을 먹으며 생활했다. 원고는 일본군이 종전이 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다. 20명이었던 여성들은 자살 등으로 14.5명으로 되어 있었다.

얼마 후 원고들에게 조선 남성들 몇 명이 찾아 왔다. 그들은 귀국선이 왔으니 빨리 배에 타라며 섬을 돌고 있었다. 원고는 처음에는 '또 일본이 속이려고 한다' 생각하고 거부했으나, '배에 타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설명에 그들의 권유를 받아 들였다. 그들이 오지 않았다면 종전이 되었다는 사실은 모르는 채 지금도 라바울에서 살고 있을지도 모를 상황이었다.

1946년 4월, 원고는 귀국선으로 부산항에 도착했다. 그러나 원고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또한 몸을 의탁할 곳도 없었다. 성병도 재발했고 키니네 다양복용에 의한 부작용으로 몸도 다 망가져 버렸다.

생선행상 등을 하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낳을 수 없었고, 혼자서 전후를 살아왔다. 원고는 전후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을 정도이다.

## 2. 원고 B

원고 B는 1922년 경 한국의 전라북도 익산군에서 태어났다. (식민지 시대 여성들은 국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던 관계로 호적 상의 생년월일 등은 정확치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 B의 출생일은 호적상으로는 1918년 10월 20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확한 것이 아니다.)

원고의 가족은 양친, 할머니, 남동생과 원고, 다섯 명이었으며 가난한 소작으로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 정도로 그 궁핍함이 극에 달해 있었다.

1940년 여름, 원고가 만 18세일 때, 중년의 조선남성이 원고의 마을에 와서 '상하이에 가면 좋은 데가 있는데 가지 않겠느냐'고 꾀며 30엔인가 40엔을 내놓았다. 상하이에 도착한 후의 일의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설명이 없었으나 물론 원고는 군대위안부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치 못했던 일이었다.

원고는 받은 돈을 어머니에게 건네주고 그 날 안으로 남자를 따라 혼자서 고향을 뒤로 했다. 그 남자는 마을의 각 집을 다 돌아다녔던 듯 싶었다.

원고는 익산군 여관에서 일박하고 다음날 이리 부근의 여관에 모집되어 있던 15명의 조선인 여성과 합류했다. 이리 부근에서 기차를 타고 서가장을 지나 상하이 가까이의 시골 집에 도착했다. 15명의 여성은 모두 18-9세 정도였고, 전원 치마저고리를 입고 있었다.

그런데 상하이 부근의 역에서 일본인 헌병에게 넘겨져 군용트럭으로 2시간 정도 달려 상하이 교외에 닿았다. 그 곳은 일본군대의 주둔지였다. 그리고 일본군대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 군용 텐트가 삼삼오오 세워져 있었다. 그 군용텐

트는 국방색의 천막으로 깨끗하지 않았고, 바닥은 나무를 간 조야한 것이었다. 텐트는 천으로 되어 있어서 비가 오면 군인들은 비옷을 가져다 군용텐트 위에 걸쳤다. 일부자리는 없었고 담요 2장이 지급되었을 뿐이다.

다다미 3장 정도의 좁은 군용 텐트에 각각 한명씩 살게 했다. 원고는 무엇을 하게되나 했는데 군인을 상대하도록 하라는 말에 하늘이 놀라고 땅이 흔들릴 지경이었다.

원고는 거부했으나 군인을 상대하지 않으면 일등병에게 얻어맞았다.

처음 1-2년은 도망 못하도록 경계도 엄했고, 밖으로는 전혀 재보내지 않았다. 원고는 도망치고 싶었으나 부근에는 민가는 전혀 없었고,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도 몰랐고 또 지리도 전혀 몰랐다. 더구나 군인이 옆에 있기 때문에 도망치는 것을 생각조차 못할 일이었다. 고향생각만 나고 하루종일 울기도 했다.

식사는 10시와 4시, 하루 2식이었다. 식사는 군대가 식사하는 곳에 여성 4명이 먹으러 갔다. 이 식사는 군에서 식사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서 그 자급을 받았던 것이다. 식사는 적은 양의 밥과 단무지, 된장국만으로 된 아주 보잘 것 없는 것이어서 늘 배가 고팠다. 넷이서 식사를 할 때도 군대식이었고 이야기를 하는 일은 없었다. 군용텐트로 된 방은 더러웠고, 겨울에는 추위에 떨며 뜨거운 물을 넣은 '유답보'라는 것을 천에 싸서 이불 속에 넣는 것만으로 견뎌냈다.

아침 여덟시 경부터 군인이 왔다. 낮에는 하급병사였고, 밤에는 장교가 와서 묵고 갔다. 머물고 가는 손님이 돌아가면 바로 다른 군인이 왔다. 하루 10명에서 15명 정도의 군인들이 왔다. 하루 5명 정도인 날도 있었다. 또 하루에 50명의 군인을 상대했던 적도 있었다. 토요일, 일요일은 숫자가 더 많아졌다. 장교들은 피임구를 사용했으나 하급병사들은 그런 것 따위는 전혀 가져오지 않았다.

군의라고 여겨지는 사람에게 1주일에 한 번 정도 성병체크를 받았다. '606호'라는 주사를 맞았었다. 상하이에 가서 3년 좀 지났을 무렵 미야자키 소위가 취해서 원고 B의 이름인 가네코란 이름을 군용텐트 밖에서 불렀다. 그 때 원고 B는 다른 군인의 상대를 하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그러자 그 미야자키 소위는 화가 나서 "쌓! 개새끼!" 하고 소리를 지르며 방안으로 달려 들어와 '네년들(조선인 위안부를 가리킴)은 죽어 마땅하다'고 외쳐대며 원고 B를 향해 칼을 뽑아 내리쳤다. 원고 B는 허리에 칼을 맞았는데 지금도 그 상처가 남아 뼈가 아래위로 움직이는 상태다. 또한 미야자키 소위는 군화로 원고 B의 명치를 걷어차서 그 때문에 원고의 배에는 지금까지도 케로이드(Keloid) 흔이 남아있다. 허리의 상처는 지금도 아프며 치료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 그와 같은 폭행을 당해도 원고 B는 아무런 방도가 없었다.

위안소 구조는 위안소 입구에서 병대가 군표를 지불하고, 군인들은 군용텐트 앞에 줄을 지어 기다렸다. 군인들은 비가 올 때도 밖에 줄을 서서 기다렸다. '오토상(아버지)', '오카상(어머니)' 라 불리우는 동경에서 온 고령의 일본인 부부가 원고 B 등을 담당하고 있었다. 원고 B는 약 4년 간 상하이 교외의 군대위안소에서 군용텐트속에서 죽지못해 살았고, 매일같이 강간당하는 생활이었다.

그동안 급료도 일체 없었고, 한 문 못받고 군표도 원도 없었다.

1945년 8월 15일 '평화가 왔다. 모두 나와라!' 하는 외침에 원고 B가 밖에 나오자 트럭 두대가 있어서 그걸 타고 육로로 고향으로 향했다. 고향에 돌아와

보니 원고 B가 없어져서 충격을 받은 것인지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시고 없었다. 남동생에게는 숙모집에서 집안일을 도왔었다고 거짓말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전후 원고 B는 가난함 속에서 살아 왔다. 현재 결혼했으나,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다. 원고 B는 현재 '나이를 먹어도, 애도 못낳는 몸이 되어 버렸으며, 한푼도 받지 못하고 아무에게도 말못하는 체험을 강요당했다. 이 괴로움, 고통, 억울함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 3. 원고 김학순

원고 김학순(이하 김학순이라 함)은 1923년 중국 동북지방의 길림성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난지 얼마 후에 아버지가 바로 사망했기 때문에 어머니와 함께 친척이 있는 평양으로 돌아와 보통학교 4학년까지 다녔다. 어머니는 가정부 등을 했는데, 집이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김학순도 보통학교를 그만 두고 아이보는 일이나 심부름 등을 했다. 김태원이란 사람의 양녀가 되어 14세부터 기생학교에 3년간 다녔는데 1939년 17세(한국 나이)가 되던 해 봄, '거기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김학순의 동료로 한 살 위인 여성(에미코라 했다)과 함께 양부를 따라 중국으로 건너갔다. 트럭을 타고 평양역에 가서 거기서부터 군인 밖에 타지 않는 군용열차에 태워져 3일간을 달렸다. 몇번이나 바꿔탔는데 안동과 북경을 지난 후 도착한 곳이 北支, 카카현, 철벽진이란 것밖에는 몰랐다. '철벽진'에는 밤에 도착했다. 작은 부락이었다. 양부와는 거기서 헤어졌다. 김학순 등을 장교가 중국인 집으로 안내하고는 방에 들어가게 한 후 자물쇠를 걸었다. 그 때 처음으로 '당했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말 우는 소리가 들렸다. 옆방에도 3명의 조선인 여성이 있었다. 얘기를 하자 '어쩌자고 이런 바보짓을 했느냐'고 하여 몇번이나 '도망쳐야지' 하고 생각했지만 주위가 군인으로 가득한 것 같았다. 그 날 아침에 장교가 왔다. 같이 온 에미코와 따로 떼어져, '걱정 마라, 시키는 대로만 해' 하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옷을 벗어'라고 명령을 받았다. 폭력을 당해 따를 수 밖에 없었는데 다시 생각한다는 게 너무나 괴롭다.

다음날부터 매일 군인, 적을 때는 10명, 많을 때는 30명 정도의 상대를 해야 했다. 아침 8시부터 30분 간격으로 군인이 왔다. 자기들이 콘돔을 가져왔다. 밤에는 장교를 상대해야 했다. 병대는 아침부터 밤까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자도 있었다. '토벌'을 위해 출진하기 전날의 병대는 홍문해 있었고, 특히 난폭했다. 조선인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었다. 방안에서는 중국인이 남기고 간 중국옷이나 일본군의 현 군복을 입혔다. 일주일 내지 한 달에 한 번 군의가 와서 검진을 받았다. 동 원고는 폐병에 걸렸기 때문에 여러가지 약을 복용하게 되었다. 606호라고 불리는 주사도 맞았다.

김학순은 거기서 '아이코'라는 이름이 주어졌다. 나머지 4명의 조선인 여성은 함께 온 '에미코' 외에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시즈에' 22세, '미야코' 19세, '사다코' 19세였다. 시즈에는 특별히 장교용이라고 하여 방 한칸을 혼자서 쓰게 했는데 다른 네명은 방 하나를 거적으로 네 개로 칸을 나누어 들어가야 했다. 식사는 군에서 쌀, 된장 등을 받아 자취를 했다.

이 철벽진에 있는 일본군 부대는 약 300명 정도의 중대규모였으며, 중국 북

부를 전전해 왔다. 철벽진에서 한달 반 정도 있었고, 그 후 몇번 이동했다. 김학순 등 여성들도 함께 이동시켰다. 가는 곳마다 중국인 마을에는 중국인이 한 사람도 없었다. 항상 빈 집으로 된 중국인 집을 위안소로 썼다.

어느 날 군인 하나가 중국인 두 사람을 데려와 모두가 보는 앞에서 눈을 가리고 손을 뒤로 묶은 후 일본칼로 목을 자르는 장면을 목격했다. 간첩이라고 했지만 너희들도 말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본보기였다.

김학순은 매일 계속되는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 도망하려고 했으나 주변에는 항상 일본군 병사들이 있었고, 민간인과 접촉할 기회도 별로 없었다. 중국 지리도 모르고 물론 말도 못하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 해 가을 어느 날, 병사들이 전쟁터에 나가고 조금밖에 없었을 때, 한 조선인 남성이 방에 몰래 숨어 들어와 자신도 조선인이라고 했다. 그 사람에게 도망가게 해 달라고 부탁하여 밤에 몰래 탈출할 수가 있었다. 그 조선인 남성은 조원찬이라고 했는데 은전매매를 하는 사람이었다. 김학순은 이 조원찬을 따라 남경, 소주 그리고 상하이로 도망쳤다.

상하이에서 두 사람은 부부가 되어 프랑수 조계 안에서 중국인을 상대로 전당포를 하면서 은둔하며 해방이 될 때까지 생활했었다.

1942년에는 딸, 45년에는 아들이 태어났다. 46년 여름이 되어 중국에서 동포 광복군과 마지막 배로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인천의 피난민 수용소에서 딸이 죽고, 1953년 조선동란 중에 남편도 죽어, 김학순은 행상을 하면서 아들을 키웠는데 그 아들도 국민학교 4학년 때 물에 빠져 죽었다. 유일한 희망이 사라져 같이 죽고 싶었으나 죽지 못하고 한국 내를 전전하면서 술, 담배도 하게 되는 등 힘든 생활을 해왔는데 10년 쯤 전부터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고 서울에서 가정부 생활을 했다. 지금은 늙어서 정부의 생활보호를 받아 근근히 생활하는 상태이다.

친척도 없는 김학순에게 인생의 불행은 군대위안부를 강요당한 데로부터 시작되었다. 돈을 아무리 준다고 해도 되돌릴 수는 없다. 일본정부는 나쁜 것을 나쁘다고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사실을 밝히고 한국과 일본의 젊은이들에게도 알려, 다시는 이런 행위가 반복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 4. 원고 박복자(가명-이하 박복자라 함)

원고 박복자는 1921년 10월 22일 경상북도에서 태어났다. 박복자가 태어났을 당시 아버지는 정미소에서 근무하며 사무를 보고 있었다. 가족은 부모와 5남매로 형제 중에서 박복자가 장녀였다.

1931년 박복자가 달력나이(이하 박복자의 연령은 달력나이)로 11세쯤, 아버지는 기독교의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서울 신학대학에 입학했다. 그 때문에 가족은 뿔뿔이 생활하게 되어 박복자는 충청남도 천안군의 목사집에 맡겨졌다.

1936년 박복자가 15세쯤, 박복자의 아버지는 목사가 되어 충청남도의 부강에 있는, 신자가 20명에서 30명의 작은 교회의 목사가 되어 가족과 같이 생활하게 되었다. 그러나 1937년 박복자가 16세이던 해 가을, 박복자의 아버지는 경찰에 쫓기는 몸이 되어 경상북도에 있는 이모를 찾아가 낮에는 산에 숨고, 밤에는 이모집에 숨어 지내는 도망생활을 강요당했다. 그 때문에 가족은 다시 뿔뿔이 흩

어졌다. 같은 해 겨울부터 박복자는 부강의 전도부인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했다.

1938년 봄, 16세와 18세의 친구 두명이 박복자를 「같이 공장에 돈벌려 가자」고 유혹했다. 부용의 전도부인의 집에서 30-40분 걸어간 곳에 일본인이 있었다. 소개인인 일본인의 집을 방문하자, 그 집에 소개인의 집은 그 거리안에 있었다. 소개인인 일본인은 「공장에서 일하는 또꼬노마에 일본도가 장식되어 있었다. 소개인인 일본인은 「공장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을 모집하러 왔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했다. 급료는 얼마마든 가 하는 자세한 이야기는 알 수 없었다. 박복자와 두명의 친구와 게다가 또 한 명의 친구까지 네명은 두 일본인 남자(군인은 아니다)를 따라 서울에 왔다. 일 본인 경관인지 군인의 집이라고 여겨지는 건물에 도착하자 이미 열명 정도의 여자가 모여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두명의 일본인 군인이 인솔해서, 약 15명의 여자를 열차에 태웠다. 군인은 「중국의 천진 공장에 간다」고 설명했다. 열차는 계속 달려 다음 날 오전 11시쯤 천진에 도착했다. 열차 안에서 주먹밥을 받았다. 고향을 떠나 조선인 승객이 없어져 박복자는 점차 불안해졌다.

열차에서 내리자 짚차가 두 대, 트럭 한 대가 와 있었다. 짚차에 군인이 각 두명, 트럭에 다섯 명정도 타고 있었다. 박복자와 여자들은 트럭에 실리고 트럭과 짚차는 좁쌀과 옥수수의 건초속을 달려 빼탄 부대에 도착했다. 공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여자들은 「보내 주세요」라며 울었지만 군인들은 여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했다.

식당에 끌려가고 식사가 나왔지만 공포가 때문에 먹을 수가 없었다. 왜 이런 곳에 끌려왔는지 몰랐다. 식당에는 박복자와 15명의 여자 외에 30-40명의 여자가 있었다. 먼저 식당에 와 있던 여자에게 「뭐 하는 곳이에요?」 묻자, 20세 정도의 그 여자는 「죽는 것 이상의 괴로움이 있지만, 명령에 따라야만 한다」고 했다. 박복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세탁이나 식사 등 군인을 들보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군대위안부가 되었다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군인이 있다는 것만으로 두려웠었다. 조선어로 말하면 「조선말 하지마」라고 고함쳤다.

다음 날 아침, 빼탄에서 20명 정도의 여자가 대, 여섯 대의 마차에 실려 천진에 돌아와 다시 열차에 실리고, 열차는 약 4시간 후 德縣에 도착했다. 덕현에서 마차로 세시간을 달려 저녁에 나스메쿄에 도착했다. 마차의 앞뒤에는 짚차가 쫓아 달리고 있었다.

나스메쿄의 가네야마 부대는 성벽안에 있었다. 20명 전원이 커다란 텐트에 들여 보내졌다. 다음 날 오전은 세탁, 청소를 시켰다. 점심식사 후 집합을 시켜 놓고는 군인이 여자들에게 「여기까지 올 때에는 여러분, 각오하고 왔죠?」라고 말하기에 여자들은 「우리들은 공장에 오는 줄 알았다. 보내줘」라고 했다. 그러자 군인은 「무슨 불평이야. 군인은 나라를 위해, 너희들을 위해 싸우고 있는거야. 이제부터 조금만 고생하면 좋은 날이 올거야」라며 여자들에게 각각 방을 줬다.

여자들은 오후 3시경 각자 다다미 두장 정도의 좁은 방에 들어갔다. 마루에는 수수로 짠 깔개가 깔려 있었다. 방 앞에는 커텐이 쳐져 있었다. 박복자는 같이 끌려온 여자 이외의 여자는 없었다. 박복자의 방은 「8호」였다. 박복자는

카네다 키미꼬라고 불렸다.

여자 한 명은 끌려온 직후 사살되었다. 박복자는 말을 듣지 않아서 3일 만에 군인에게 총검으로 가슴을 찔리는 부상을 당했다. 그 상처는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있다. 상처의 치료를 위해 20일 정도 방에서 보낸 후 다른 네명의 여자들과 같이 石家莊 부대로 끌려갔다. 나스메쿄에서 트럭으로 덕현에 돌아와 덕현에서 열차로 북경에 가고, 북경에서 마차로 다섯시간 정도 이동한 곳에 부대가 있었다. 가까운 곳에 아편공장과 밭이 있었다. 박복자는 여기서 1년여 세월을 보냈다.

여기서 박복자의 방은 「3호」였다. 이제는 죽지 않기 위해 따를 수 밖에 없었다. 세 명을 상대하자 아파서 움직일 수도 없었다. 부대에는 중국인도 일하고 있었다. 한달 정도 후부터 중국인의 권유로 아편을 피게 되었다. 지옥과 같은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박복자는 그 뒤로 나스메쿄, 평양, 류따마루 부대의 위안소에서 각 1년 전후 모두 6년 간을 위안소에서 보내야만 했다. 나스메쿄에서는 조선인인 유부대장과 같은 목사의 자식이라는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인지 친했었다.

평양의 부대는 미야모토 부대라고 했다. 평양은 덕현에서 열차로 2시간 정도의 거리에 있었따. 낮에는 세탁, 청소, 부상병을 돌보았다. 오후 6시나 7시 경부터 오전 0시경까지 군인을 상대해야만 했다. 몸상태가 나쁜 여자는 1일 20명, 건강한 여자는 1일 30명의 군인을 상대해야만 했다. 밖에는 군인이 표를 들고 열지어 늘어서 있었다.

성병검사는 1주일에 한번 있었다. 콘돔은 군인이 한 사람에 두 개씩 가지고 있었다. 귀가 부었을 때는 육육(606)이라는 주사를 맞은 적이 있다. 식사는 군인이 당번으로 만들고, 군인도 같은 식사였다. 된장국, 감자, 단무지, 계란 등이었다.

의복은 중국옷, 간편한 옷(원피스), 기모노 등을 입었다. 시장에 장보러 갈 때는 군인이 감시로 따라 붙었다.

박복자는 매일 군인을 상대해야 했기 때문에 완전히 건강을 해치고, 병으로 자궁이 내려앉고 말았다. 박복자는 류타마루에서 나스메쿄의 유부대장에게 전화를 해 「몸이 안좋은데 어쩌지?」라고 도움을 청했다. 유부대장은 헌병대장을 설득해, 박복자가 치료차 부대를 며칠 수 있는 허락을 얻었다. 1944년 24세이던 해 가을, 박복자는 고향에 돌아 왔다. 박복자는 경상북도의 이모집을 찾아갔다. 1945년 4.5월 경 박복자는 부산시 광복동 소재의 손산부인과에서 자궁적출 수술을 받았다.

박복자는 심부름을 하는 등 계속 혼자서 살아왔다. 몸이 아프고 안정제가 없으면 잘 수 없다.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고 지금도 행방을 알 수 없다. 앞으로도 혼자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된다. 박복자는 지금 군대위안부로서 희생된 자신의 과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하고 있다.

##### 5. 원고 길갑순(吉甲順 이하 「길갑순」이라 함)

길갑순은 1924년 12월 7일 전라북도의 지주의 딸로 태어났다. 더부살이 고용인이 4-5명 있는 유복한 가정이었다. 딸이 낮에 혼자서 밖에 나가서는 안된다 는 아버지의 가르침에 낮에는 학교에 가지 못하고 13세부터 야간학교에 다녔다.

1940년 길갑순이 달력나이로 17세이던 해 11월(음력). 팔이 끌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길갑순의 어머니는 길갑순에게 「여자들이 큰일 났어. 너는 이 집에 없 는게 낫겠어」라며 명목상의 결혼을 권유했다. 길갑순은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의 미를 잘 몰랐지만 웬지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러나 그로부터 1개월 후인 12월 5 명의 군인이 길갑순의 방에 들어와, 「잠깐 일이 있어,」라며 길갑순을 집밖으로 끌 어냈다. 부모와 고용인이 있는데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길갑순은 군인에게 들려싸여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밖에 나오자 트럭이 길갑순의 집 대문앞에 서 있었다. 길갑순이 처음이었다. 도중에 몇번이고 여자들을 태워 트럭이 가득찼 다.

트럭의 양끝에 붙은 의자에는 대여섯명의 군인이 앉아 있었다. 트럭은 하루 밤을 달려 커다란 건물 앞에 섰다. 군인은 여자들을 커다란 건물안에 넣었다. 건물안에는 여자가 수백명은 있었다. 군인도 다수 있었다.

그 중에서 30명의 여자가 불렸고, 배바닥에 실렸다. 배에 실릴 때 「후지꼬」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이름이 불렸을 때 길갑순은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여자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올고 있었다.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 배바닥에서 나올 때에도 군인이 따라 왔다.

배가 육지에 도착했다. 「나가사끼」라는 단어가 귀에 들어왔다. 배에서 내려 부두를 지나 항구 근처의 2층 시멘트 건물로 끌려갔다. 거기서 길갑순 이외에 30명의 여자는 30세 정도의 일본여자 세명으로부터 한달간 훈련을 받았다. 훈련의 내용은 일본어, 예의범절 그리고 남자에 대한 서비스 방법이었다. 「남자가 오면 옷을 벗기세요. 거부하지 말 것」이라고 했다. 길갑순은 이제부터 무엇을 할지 알고 있었지만 화장실에 갈 때에도 감시가 있어 도망갈 수가 없었다.

한 달간의 훈련 후 길갑순과 여자들은 배에 실리고, 트럭에 실려 3층으로 된 홀륭한 건물의 3층에 끌려갔다. 각자 작은 방을 배당받았다. 곧 도망가려고 했던 여자는 불잡혀 지하실에 끌려갔다. 그리고 여자 전원이 지하실에 끌려가 늘어 서라는 명령을 받았다. 도망가려 했던 여자는 전라로 거꾸로 매달려 맞았다. 군인은 군도로 그 여자의 유방을 도려내고, 배를 갈라 내장을 꺼내 서있는 여자들에게 던지며 「너희들도 도망치려 하면 이런 꼴이 돼」라고 했다.

길갑순은 무서워서 화장실 창으로 도망가려고 했으나, 불잡혀 지하실까지 끌려갔다. 이번에는 길갑순이 거꾸로 매달려 기절하자 물을 끼얹어 상반신 옷을 벗기고 등에 인두질을 했다. 화상의 흔적은 지금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 날, 군인을 상대했다. 반항할 수 없었다.

방에는 창이 없었다. 화장실 창에서 간신히 밖을 내다 볼 수 있었다. 가까이에 공장이 있었다. 멀리 수평선이 보였다. 가까이에서 걷고 있는 것은 군인뿐이었다.

식사는 배에 탔을 때는 좋았지만 배에서 내린 뒤는 죽지 않을 만큼의 양만이 나왔다. 대체로 주먹밥이었다. 의복은 일본옷이나 원피스였다. 둘째 주는 사람은 「엄마」라고 불리는 30대의 일본인 여자였다. 여기서도 화장실에 갈 때도 감시가 있었다. 언제나 같은 군인이 감시를 했다. 오후부터 밤, 군인이 5명에서 10명이 와 상대를 해야만 했다. 군인이 오지 않는 날도 있었다.

성병검사는 없었다.

1942년 19세일 때, 길갑순은 임신, 출산했다. 우는 소리 때문에 「엄마」에게 발각되었고, 「엄마」는 「걱정하지마. 유모가 키울거야」라며 아이를 데리고 갔다. 1주일이나 열흘에 한번 정도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와 얼굴을 보여줬다. 그 아이는 덕일이라고 이름지었다. 출산한 뒤로 상대해야 할 군인의 수가 줄었다. 또 출산한 뒤로는 군인이 돈을 주게 되었다. 받은 돈은 요밀에 넣어 두었다.

1944년 21세 일때 둘째 아이를 낳았다. 둘째 아이는 토시하루라고 이름지었다. 어느날 폭격이 있고, 길갑순이 갖혀 있던 건물이 파괴되었다. 길갑순은 요밀의 돈을 꺼내 1층에 기어내려가 두 아이를 발견하고는 두 아이와 같이 항구로 도망쳤다. 항구는 아주라장이었다. 길갑순은 돈을 주고 몰래 배를 타고 드디어 부산에 도착했다.

두 아이를 데리고 고향에 돌아오자 집에는 낯선 사람이 살고 있고, 가족의 행방은 알 수 없었다. 두 아이는 홍역으로 잇따라 죽었다.

#### 6. 원고 노청자(盧淸子 이하 「노청자」라 함)

노청자는 1922년 2월 16일 충청남도 가난한 소작농에서 태어났다. 노청자는 부모, 형제와 같이 생활하며, 집안일과 농사일을 드고 있었는데 1938년 3월, 노청자가 16세이던 봄 노청자의 어머니는 마을에서 「여자들이 군대에 끌려간다」는 소문을 들었다. 노청자는 설마 자신의 마을에까지 군대가 오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그러나 그 일이 있은지 5일 후 노청자가 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 오후쯤 어머니가 황급히 달려와 노청자에게 가져온 점심을 먹인 후 자신의 치마를 벗어, 그것을 노청자의 머리에 씌우고 「병대가 왔어. 빨리 아주머니댁으로 피해라」고 말했다. 노청자는 너무 불안했으나 처녀라는 것을 모르도록 어머니의 치마를 머리부터 쓰고, 도보로 2시간 거리의 산속에 있는 아주머니댁을 향해 필사적으로 걸어갔다. 약 한시간 아주머니댁까지 반정도 걸어갔을 때쯤 노청자는 일본군인 7인(현병 한명, 병사 여섯명)에게 잡혀버렸다. 군인들은 노청자의 손을 잡아끌고, 다리를 잡았기 때문에 노청자는 도저히 도망칠 수가 없었다. 노청자를 군인 중 한사람이 어깨에 메고 그대로 트럭에 실었다.

언덕을 올라 내리막길에 트럭이 있었다. 트럭 한대에는 18세 전후의 여자가 노청자를 포함해서 38인이 탔다. 그 밖에 감시관인 30대의 일본인 여자가 두명 타고 있었다. 여자들이 탄 트럭뒤에 또 한대의 트럭이 따르고 있었다. 거기에는 스무명 정도의 군인이 타고 있었다. 여자들은 모두 손을 마주잡고 「우리들은 이미 다 죽었어」라고 하며 소리내어 울었다.

트럭은 그 날 오후 마을을 떠났다.

창고같은 곳으로 끌려가 주먹밥과 물을 받은 후 트럭은 야간에도 계속 달렸다. 그리고 2일간 기차를 타고 타이카친이라는 곳에 도착했다. 기차에서 내리자 대기하고 있던 트럭에 실려 3~4시간 이동한 뒤 오오테산에 도착했다. 오오테산 부대는 성벽 안에 있었다. 38명의 여자들은 모두 같이 끌려왔다. 위안소는 부대안에 있었다. 마굿간 같은 곳에 작은 방을 판자로 칸막이 해서 만들어져 있었다. 두명이 겨우 들어갈 정도 크기의 방으로 방앞에는 커텐이 쳐져 있었다. 판자 마루에 얇은 요가 깔려 있었다. 마굿간 같은 곳은 작은 방이 몇개나 있고, 38명의 여자가 들어가고도 방 다섯개 정도 남아 있었다. 노청자는 27번이었다.

마궁간 같은 곳에 들여 보내지고, 군인이 왔을 때 처음으로 군인을 상대하는 것을 알았다. 노청자는 그 때 일을 생각하면 말이 나오지 않는다. 처음은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군화에 얼굴이 채여 코피가 났다. 「조선인인 주제에 이년 이. 때려 눌혀주지, 라는 말도 들었다.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굴욕의 매일이었다. 오전은 일반병사가 왔다. 점심을 마치고, 목욕을 한 뒤, 오후에는 상관을 상대해야만 했다. 하루에 30명, 40명의 군인을 상대해야만 하는 날도 있었다. 지금도 다리가 붓고 아픈 것은 이 때의 일이 원인이 아닌가 생각한다.

휴일은 한달에 한번 뿐이었다. 생리중에는 「저는 생리중이에요.」라고 해 속옷을 더럽혔다. 생리중에도 상대를 시키는 군인은 있었지만 그래도 보통때보다는 적어지기 때문이다.

1주일에 한번 군의가 성병검사를 했다. 성병에 걸린 여자는 별동으로 옮겨졌다. 콘돔은 군인에게도 군대위안부에게도 지급되었고 반드시 사용했다.

위안부 생활에서의 조그만 즐거움은 위문주머니를 받는 것이었다. 위문주머니는 한달에 한번 정도 배부되었다. 속에는 천명이 바느질 한 일본식 속치마와 통조림, 비누, 크림 등이 들어있었다. 위안소에서 돈을 받은 일은 전혀 없다. 군인 중에는 건빵을 가져오는 사람도 있었지만 던져보냈다.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활동일지  
(1992. 2. - 8. 15)

1992. 2. 1 U.N 인권위원회 정신대문제 상정위해  
- 2. 29 이효재 공동대표 미국의 뉴욕과 워싱턴 방문 홍보활동 전개
1992. 2. 12 5차 수요정기시위
1992. 2. 18 "정신대" 첫 증언자 김학순 할머니 적십자병원에 입원
1992. 2. 19 6차 수요정기시위
1992. 2. 21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김학순 할머니 무료입원 요청 공문발송
1992. 2. 26 7차 수요정기시위
1992. 2. 27 U.N 여성지위 위원회에 정신대문제 관련 호소문과 자료문건 발송
1992. 2. 28 교회여성연합회 회원 28명(위안부할머니 2명)이 일본현지에서  
~ 3. 7 "종군위안부 발자취를 따라서"라는 제목으로 추모예배 드림
1992. 2. 29 현재 "정신대"신고센타 신고접수 종군위안부 70명(생존41명)  
근로정신대 90명(생존자 70명), 기타 40명
1992. 3. 4 U.N 인권위원회에 정신대문제 관련 호소문과 자료문건 발송
1992. 3. 4 8차 수요정기시위
1992. 3. 8 전북 전주시 교회 연합 3.1기념예배시 박순금 공동대표  
"정신대문제 강연"
1992. 3. 11 9차 수요정기시위
1992. 3. 17 이효재 공동대표의 "유엔 인권위원회 정신대문제 상정보고"  
기자회견
1992. 3. 18 10차 수요정기시위
1992. 3. 25 11차 수요정기시위
1992. 3. 27 본 협의회 김신실·선생, 위안부 문옥주 할머니 일본 후쿠오카  
시민단체 초청으로 강연차 일본 방문
1992. 4. 1 12차 수요정기시위
1992. 4. 8 13차 수요정기시위
1992. 4. 15 14차 수요정기시위
1992. 4. 22 한국교회여성연합회의 "일본현지 추모예배 보고회"와 "심미자  
할머니, 황금주 할머니 증언"  
14차 수요정기시위  
본 협의회 주최 "정신대 문제와 한·일정부의 책임" 공청회
1992. 4. 22 15차 수요정기시위
1992. 4. 29 16차 수요정기시위
1992. 5. 1 5월 가정의 달 "정신대" 할머니들 경로잔치  
~ 2
1992. 5. 1 회생자 자치모임 "무궁화자매회" 형성
1992. 5. 6 17차 수요정기시위
1992. 5. 7 5월 7일부터 시작되는 유엔 인권위원회 산하 Working group on  
Contemporary Forms of slavery에서 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과 International Abolitionist Federation  
이 정신대문제의 공동제안자로서 제기함. 이 회의에 참여하는 10  
여 개의 민간단체에 지지를 호소하는 편지와 자료를 우송함.
1992. 5. 9 본 협의회 김신실 선생, 문옥주 할머니, 야마시다 영애 문옥주  
~ 11 할머니 "시모노세키 우체국에 저금" 증언과 관련 일본 방문
1992. 5. 13 18차 수요정기시위
1992. 5. 20 19차 수요정기시위
1992. 5. 27 20차 수요정기시위

1992. 5. 29 이화여대 영문학과 학생회 정신대 할머니돕기 하루장터 마련  
 1992. 6. 3 21차 수요정기시위  
 1992. 6. 5 "일본 PKO 강행통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 발표  
 1992. 6. 7 "전후보상실현을 위한 한·일 심포지움" 개최  
 1992. 6. 10 22차 수요정기시위  
 1992. 6. 17 23차 수요정기시위  
 1992. 6. 19 윤정옥 공동대표 종군위안부 실태조사를 위한  
     - 29 일본흔슈와 중국 동북부 방문  
 1992. 6. 24 24차 수요정기시위  
     "김종필, 오히라 메모사건의 전모를 공개하고 역사의 진실을  
     밝혀라!" 제목하에 성명서 발표  
 1992. 6. 30 무궁화자매회 6월 월례회  
 1992. 7. 1 25차 수요정기시위  
 1992. 7. 6 일본의 "종군위안부 조사연구" 발표  
 1992. 7. 7 "일본의 종군위안부 조사연구 발표에 대한 우리의 입장" 발표  
 1992. 7. 8 26차 수요정기시위  
 1992. 7. 15 27차 수요정기시위  
 1992. 7. 21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저지와 전후책임을 확실히 하는 연대회의"  
     발족  
 1992. 7. 22 28차 수요정기시위  
 1992. 7. 27 윤정옥 공동대표의 "종군위안부 실태조사를 위한 일본흔슈와 중국  
     동북부 지방 방문 보고회" 개최  
 1992. 7. 29 29차 수요정기시위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저지와 전후책임을 확실히 하는 연대회의"  
     주최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과 동북아의 평화문제" 공청회 개최  
 1992. 8. 2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저지와 전후책임을 확실히 하는 연대회의",  
     주최로 "일본이 다시 온다" - 신군국주의 부활저지를 위한 영화제  
 1992. 8. 5 30차 수요정기시위  
 1992. 8. 8 유엔 인권위원회 본회의 안건을 결정하는 유엔 인권위원회 소위  
     26 원회(스위스 제네바)에 참가, 정신대문제 발언 및 로비활동전개  
 1992. 8. 10 "정신대문제 아시아연대회의" 개최(필리핀, 일본, 대만, 홍콩, 태국,  
     - 11 한국 참석)  
 1992. 8. 12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저지와 전쟁범죄 배상촉구를 위한 시민  
     대회"

## 일본정부의 종군위안부 조사발표에 대한 우리의 입장

- 7월 6일, 일본정부가 발표한 종군위안부 조사내용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일본정부는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전모를 밝혀라!

1. 일본정부의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조사발표는 무성의하고 형식적이다.  
 종군위안부 만행에 대한 은폐, 축소 조작을 즉각 중단하라!

6일 일본정부가 조사하여 발표한 "종군위안부"에 대한 보고내용을 접하면서  
 전후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통한 한일간의 우호증진을 갈망해 온 우리는 문제해결  
 에 대한 일본정부의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조사내용은 이미 민간단체에서 발굴한 자료와 피해자들의 증언에 의해  
 밝혀진 내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일본정부가 발표한 조사내용은 위안부  
 의 모집, 위안소의 설치, 경영, 감독 등 제목만을 나열하고 있을 뿐이고, 그 구  
 체적이고 참혹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는 바가 없다. 또한 이러한 정책에  
 대한 일본군의 명령계통이 어떠했는지도 전혀 알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책임의  
 소재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천황을 중심으로 하여 천황의 하사품으로 성적 노  
 예로서 일본군에게 제공되었던 비인도적인 종군위안부의 역사적 사실이 발표내용  
 에 담겨져 있지 않다.

우리는 구체적이고 진실한 진상조사의 토대에서 진정한 사죄와 반성이 이루  
 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  
 하고 요구해 왔다. 따라서 6일 발표와 같은 제목만 나열하는 형식적이고 무성의  
 한 조사발표는 일본군의 만행에 대한 책임을 축소, 은폐하려는 종래 일본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보면, 이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2.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실시하라!

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한 진실된 의지로 조사를 실시한다면, 첫째, 종  
 군위안부에 대한 일본군의 명령계통과 책임소재, 모집방식, 모집의 규모와 범위,  
 위안소의 지역적인 배치와 분포상황, 위안소의 비인도적인 경영실태, 폐전이후  
 위안부에 대한 귀환조치 상황, 종군위안부 문제 문서폐기 여부 등을 철저히 조  
 사해야 한다.

둘째, 한국과 일본 민간단체는 지금까지 일본 국회와 정부가 피해자들의  
 증언을 직접 듣고 조사에 임해줄 것을 수차 요구해 왔지만, 그들은 이 요구를 외  
 면해 왔다. 일본정부가 참된 의지로 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문제를 올바  
 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의 증언과 당시 종군위안부 모집, 경영에 관여했  
 던 일본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하여 전면적인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종군위안부 뿐만 아니라 근로정신대, 군인, 군속, 피폭자, 사할린 잔류자  
 등 강제연행을 당한 아시아 태평양전쟁 희생자들에 대한 진상과 해결방안을 밝  
 혀라!

일본의 조선침략과 아세아 태평양 전쟁으로 인해서 희생당한 사람은 비단 종군위안부 뿐만은 아니다. 600여 만명으로 추산되는 강제 징용 및 징병자, 조선인 피폭자, 사할린 잔유자 그리고 근로정신대들 역시 형용할 수 없는 참담한 희생을 당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6일 일본정부가 발표한 조사내용에는 종군위안부 문제에만 국한시키고 있는데, 이는 아시아 태평양 전쟁 전후 처리에 대한 책임회피이다. 일본 정부는 이들에 대한 피해의 진상규명은 물론이거니와 명부공개, 유골귀환, 공탁금반환 등을 포함한 문제해결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4. 일본은 진정으로 인권과 정의를 존중하는 국가인가? 반인도주의적인 종군위안부 만행에 대한 전모를 공개하고, 사실의 기반위에서 사죄하고 배상하라!

6일 일본정부는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어떤 형태로든 사죄의 표시를 해야 된다고 밀하면서 기금에 대한 암시적인 인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도대체 진상규명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금 운운하는 의도는 만행을 은폐한 채 종군위안부 문제의 국제적인 여론확산을 조기에 진화시키려고 하는 얄팍한 의도이다.

일본이 진정으로 인권과 정의를 존중하는 국가와 국민으로 국제사회에서 존중을 받으려면 자신이 저지른 역사적인 죄과에 대한 진실한 진상규명과 진지한 해결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종군위안부 문제는 국제법상으로 명백히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마땅히 국제법에 따라 생활기금이나 위로금의 형태가 아닌 국가간의 배상으로서 이 문제를 해야 한다.

1992년 7월 7일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여성위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천주교정의사회구현연합여성위원회

한국가톨릭여성복지위원회

반핵평화운동연합

민족작가회의여성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여성분과위원회

여학생대표자협의회

여성교회

아시아여성신학교육원

두레방

이화민주동우회

정신대연구회

###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한국정부는 김종필·오히라 메모사건의 전모를 공개하고 역사의 진실을 밝혀라!

일제국주의하에서 해방된 지 거의 반세기가 지났음에도 아직도 일본의 식민지 만행으로 인한 희생자들의 요구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고, 정신대 문제를 비롯한 일본의 태평양전쟁 희생자에 대한 배상문제가 한일간의 쟁점으로 떠 오르고 있는 이 때에 최근 언론에서 밝혀지고 있는 김종필·오히라 메모사건을 접하면서 우리는 군 육감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더우기 PKO 법안 통과로 일본이 또다시 한반도에 평화유지군의 명목으로 일장기를 앞세운 채 자위대를 파병하지 않을지 우려하는 다수 국민들도 있다.

한국정부는 '김종필·오히라 메모' 사건에 대해 조사위원회를 조성해서 그 전모를 공개하라!!

'65년 한일협정 당시 한국정부는 분단된 남한정부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청구권 조약으로 경제협력 자금을 공여받는 대신에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 해주는 크나큰 잘못을 저질렀다. 독립된 지 20년이 지난 시점이었으면서도 군 육감으로 졸속 협상에 조인한 것에 대해 "그 때는 먹고 살기 바빴기 때문에 그렇게 타결할 수 밖에 없었디"는 김종필씨의 발언은 역사에 대해 책임을 지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노력을 미화 내지 정당화 하고 있다.

한일 간의 기본관계는 일제의 식민지 통치를 전면적으로 청산하는 기초위에서 새롭게 수립되는 것이어야 했다. 따라서 일본이 과거의 식민지 지배에 대해 사죄하고 그것을 영원히 청산한다는 조항이 명시되는 것은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한일협정 제 2조에서 "양국간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는 항목에 조인함으로써 국민들을 대신해 일본에 배상을 요구하기는 커녕 국민들의 피해배상 요구의 권리마저도 박탈해 버렸다.

이렇게 군 육감적인 한일협정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5·16 군사정권에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일회담을 막후에서 조종했던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의 책임은 더욱 크다. 더우기 현 여당의 최고위원으로 여전히 정계의 일익을 담당하게 방치하고 있는 현 정부에도 그 책임은 크다 할 것이다.

김종필은 '65년의 한일협정 당시 군 육감 외교에 대한 역사적, 정치적 책임을 지고 정계에서 물려가라!!

1992년 6월 24일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교회여성연합, KNCC여성위원회, 여성의전화, 여성민우회, 이화민주동우회, 두레방, 아시아여성신학교육원, 여학생대표자협의회, 천주교정의사회구현여성위원회, 정신대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여성위원회, 민족작가회의여성위원회, 반핵평화운동연합

# 공개서한

일본정부는 정신대만행의 진상을 공개하라!!  
한국정부는 정신대 피해자들을 위한 생계대책을 세우라!!  
일본정부는 식민지만행 공개하고 배상하라!!

## 매주 수요일 정기시위(12시-1시) 일본대사관 앞

정신대 문제는 일본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밝혀지고 새로이 정립되어져야 할 역사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손에게 역사적인 교훈이 되고 세계사에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사건으로 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전후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과 사죄는 고사하고 어떤 성실한 태도로 보여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일본정부에서 발표한 종군위안부에 대한 조사발표는 형식적이고도 무성의한 발표였습니다. 그리고 강제연행되어 전선으로 끌려가 일본군인의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했던 중인들이 아직 살아 있는데도 일본정부가 강제연행사들의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했던 중인들이 아직 살아 있는데도 일본정부가 책임지지 않으려 싶을 부인했다는 것은 말로는 사죄하면서도 전혀 그들의 만행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려 싶을 부인했다는 것은 말로는 사죄하면서도 전혀 그들의 만행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려 싶을 부인했다는 것은 말로는 사죄하면서도 전혀 그들의 만행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1990년 11월 16일 발족된 이래 지금까지 역사속에서 묻혀져 왔고 왜곡되어 온 일본 제국주의 하의 “정신대”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일본정부로부터 정신대문제의 진상공개와 공식사죄를 받아내고 희생자를 위한 추모비 건립 및 생존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확보함과 동시에 역사교과서에 이를 명기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시에 역사교과서에 이를 명기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12:00 - 13:00에 일본 대사관 앞에서 정신대문제 해결 촉구 시위를 하고 있는 것도 그 노력의 하나입니다.

국민 여러분! 매주 수요일 12:00-13:00에 일본대사관 앞에서 외치는 저희들의 목소리에 동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1. 일본정부는 청신대 만행의 전모를 즉각 공개하라!!
2. 정신대만행에 대해 사죄하라!!
3. 생존자와 유족에게 배상하라!!
4. 희생자를 위해 추모비를 건립하라!!
5. 정신대 사실을 역사교과서에 명기하고 교육시켜라!!
6.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반대한다!!

현재 생존해 계신 “정신대” 피해자들은 대부분이 연로하시거나 몸이 약하셔서 정신대 문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 되어야 함을 절감케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마저 없어 매월 월세 걱정에 시달려야 하며 몇 할머니는 빠른 시일안에 방을 비워 줘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 그 분들이 편안히 쉴 곳을 마련하는 일이 하루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지 저희 협의회에 속한 회원단체 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으로 가능해 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 정신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 본인 구체 -----

조종 : 304-01-120125 정신대

국면 : 813-01-0182-492 정신대

상업 : 109-05-153750 정신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417-3 영나빌딩 102호)  
전화 : 365-4408.9 / 팩스 : 365-4409

## 내각총리대신 미야자와 기이치치하

사무라이 일본은 왜 다시 제복을 입었습니까?

우리들은 지난 6월 15일 일본의 PKO 법안과 국제긴급원조대 파견법안이 자민·공명·민사 3당의 찬성으로 통과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후 47년이 지난 지금, 일본 자위대는 이제 천황의 군대로 회귀하여 ‘국제공헌’이라는 명분아래 고삐가 풀린채 캄보디아전군나팔을 울렸습니다.

이로써 일본 자위대는 캄보디아 밀림 ‘킬링필드’의 ‘지뢰제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해외파병을 열어 군사대국화의 마수를 뻗히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아시아의 평화를 심각히 위협하는 ‘제 2의 대동아공영권’에 다름 아니며, 한반도 역시 머지않아 일본 ‘천황의 군대’의 작전지역이 될 것에 염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에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7천만 거례의 이름으로 일본자위대의 해외파병과 군사대국화를 준엄히 규탄합니다.

일본이 진정 ‘경제력에 걸맞는 국제공헌’ 의지를 갖고 있다면 우선 일본 군국주의가 태평양전쟁 당시 저지른 엄청난 전쟁죄악에 대한 청산부터 이루어야 함을 강력히 밝힙니다.

태평양전쟁 당시 천황을 위시한 일본정부와 그 하수인 ‘천황의 군대’는 20만이 넘는 젊고 건강한 조선여성들을 훤히 배불리 주고 돈까지 준다면 달콤하게 회유, 일본군의 정신대로 끌고가 일부는 위안부(이중에는 국민학생 까지 있었다)로 동원하여 일본군인들의 성적배설도구 (어떤 조선여성은 하루에도 50-100 인의 일본군인을 공중변소같은 위안소에서 상대하여)로 무참히 유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군국주의는 총알받이, 군수노동자 등으로 6백여만명을 강제징집, 그들이 세운 군수공장과 군대식당, 탄광에까지 군수노동자, 근로정신대를 동원, 전쟁이 끝날 무렵 참호에 넣어 폭사시키거나 집단학살, 혹은 정글속에 버려서 1백여만명이 사망하고 1백여만명이 부상, 실종, 고국미귀환등의 엄청난 인명피해를 입혔습니다.

조선의 우물가에서 18세때 잡혀가 어느 태평양 섬에서 미군의 총알받이로 일본군복을 입고 전투에 참여한 조선인 위안부!

중국으로 가는 기차속에서, 태평양 섬으로 가는 배 안에서 강간을 당한 채 일본천황의 하사품이 되어야 했던 조선의 어머니!

왜전후에도 중국의 한구석, 태평양의 이름모를 섬에 버려지거나 일본군에 의해 굴이나 참호속에서 불에 타죽거나 잠수함을 타고 귀국하다 기뢰에 전원 부딪혀 죽은 수천, 수만명의 이름모를 조선인 군수노동자!

600여 만명으로 추산되는 강제징용 및 징병자, 조선인 피폭자, 사할린 등  
지의 조선인 이산가족들...

일본 군국주의의 잔인무도한 조선인 밀살정책으로 인한 엄청난 피해와  
말로 형용 할 수 없이 참담하게 희생된 모든영령들 앞에서 먼저 진실되게  
사죄하기를 아끼히토천황과 일본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들은 일본정부가 기본적인 양심과 도덕성을 걸고 국제적인 망  
신을 당하기 전에 책임있는 전후처리를 즉각 시행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  
다!

극악무도한 만행에 대한 진상공개와 공식사죄, 배상없이 전범국 일본이  
'국제공헌' 운운하며 어떻게 유엔평화유지활동을 한단 말입니까? 아시아에서  
의 전후처리의 확실한 매듭없는 그 어떠한 유엔평화유지활동도 평화를 위협  
하는 것으로 7천만 거례의 이름으로 천황의 군대, 일본자위대의 해외파병과  
군사대국화를 반대합니다.

정신대 할머니, 어머니들을 두번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태평양전쟁희생자  
들과 생존자들이 더이상의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아끼히토천황과 일본  
정부에 정신대 만행진상공개와 즉각배상, 뿐만아니라 강제징용자, 원폭피해  
자, 미귀환동포등 식민지배와 전쟁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확실한 진상공개,  
피해보상, 사죄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 공개서한에 대해 8월 5일까지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 7천만 거례의 인간적인 주장!

일본정부는

1. 유엔평화유지활동을 빙자한 군사대국화 음모를 중지할 것.
2.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 PKO 법을 철회할 것.
3.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중지할 것.
4. 정신대 만행 사실을 진실되게 공개, 공식 사죄하고 즉각 배상할 것.
5. 한국인 사망자들의 유해를 발굴, 송환할 것.
6. 태평양전쟁희생자들에게 직접사죄, 국제관례에 따른 배상을 할것.
7. 태평양전쟁희생자들의 생사확인과 사망자 명단을 공개할 것.
8. 이러한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일본역사교과서에 이 사실을 명기  
할 것.

1992. 7. 1

태평양전쟁희생자 유족회(795-3315)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365-4409)  
이화여자대학교 민주동우회(338-3897)  
반핵평화운동연합(743-8849)

### 정신대에 대한 보도자료 정리

조혜란(정신대연구회)

대중들은 이제 대중매체가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주요한 몫을  
담당한다는 사실에 익숙해져 있다. 대중들의 정확한 가치판단이 요구될 때면 매  
체들은 나름대로의 바른 척도를 제시해 주기도 하고 혹은 미해결의 문제가 어둠  
속에 가려져 있을 경우에 여론을 활기시켜 문제해결의 가능성의 폭을 넓혀주기도  
한다. 대중매체들의 이런 기능은 정신대와 관련해서도 예외는 아니다.

여기에서는 1970년대 이후 국내신문과 TV 그리고 국내잡지를 중심으로 대중  
매체들이 정신대문제를 얼마만큼 그리고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연대기적으로  
분류하여 간략히 검토해 보겠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정신대문제에 대한 대중매  
체들의 입장을 검토하고 앞으로 우리 협의회가 매체들과 어떤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지를 조망해 볼 수 있으리라 본다.

자료는 정신대문제가 1990년대 이후에 크게 다루어져 있으므로 이 글은 1990  
년대 전, 후로 분류하여 검토하겠다.

#### (1) 1990년도 이전

1974년 11월 1일자 서울신문은 종군위안부에 대한 취급기사를 실고 당시 연  
행된 조선여성의 숫자가 1943년 부터 1945년 8월 15일 해방 때까지 약 20 여 만  
에 이르고 그 중 5-7만 여명이 희생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이 수치는 당시 군인들  
의 숫자와 그 숫자에 대한 위안부 여성의 비율 그리고 조선여성과 일본여성의 비  
율을 기준으로 추정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 추정수치는 현재 아직도 실태파악  
이 정확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1982년 중앙일보에서는 발굴기사로 현재 태국에 살고 있는 전 위안부  
노수복 할머니의 증언을 실고 있는데 그 이후 고국의 가족을 그리던 노씨는 84년  
동생을 찾을 수 있었다. 이들의 첫만남은 각각 태국의 방콕과 한국의 서울에 있  
으면서 이루어졌고 이를 KBS-TV에서는 위성으로 중계했다.

이를 계기로 각 주요 일간지에서는 노수복씨의 개인 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루  
었으며, 임종국씨는 정신대문제를 기고하였고 한국일보의 장명수씨는 여기자 칼  
럼을 써서 전반적인 정신대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앙일  
보에서는 국내 첫 증언자로서 배옥수씨를 발굴하기도 하였다. 그 후 노씨는 국  
내에 혈육 상봉차 다녀갔다.

1985년도에는 경향신문에서 1955년 일본 후생성 원호국이 작성한 일 정용 전  
돌자 명부를 제일 교포 강위중씨가 입수하여 전남 홍국사에 보낸 것을 다루었고,  
거기에 정신대 희생자 2백 1명이 끼여있음을 기록하고 있다.

1988년도 들어서부터는 정신대 문제가 여성계에서 좀 더 조직적으로 다루어  
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의 글이 실리고 있다. 특히 한국교회여성연합회의 활  
동이 두드러지게 중대하여 기독교 교계신문에서는 년초 윤정옥, 김혜원, 김신실  
3인이 정신대 발자취를 따라서 후꾸오까에서부터 오끼나와를 답사한 것을 다루  
었다. 교회여성연합회의 조사연구단 구성에 대해 그리고 정신대문제를 왜곡시킨

미국공영방송인 KQED-TV에 대해 항의한 사실을 다루고 있다.

(2) 1990년 이후

(2) 1990년 이후  
1990년 들어 한겨례에서는 년초 4회에 걸쳐 윤정옥씨(당시 이대 영문과 교수 현재 본협의회 공동대표)의 '정신대 발자취 취재기록'을 실었는데 이는 정신대원들과 같은 연배여성으로서, 민족의 아픔을 생생하게 다룬 기행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이를 계기로 정신대문제는 학계나 여성계에서 이전보다 더욱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이에 편승하여 대중매체들은 이런 흐름들을 전달해 주거나 혹은 자체 내 기획물을 만들어 대중홍보에 직접 나서기도 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우선 중앙일보에서는 '또 하나의 문화'라는 여성단체가 정신대 원혼을 위한 한풀이 굿을 개최했다는 것을 알렸고, 그 후 각 일간지에서는 일본정부의 정신대에 대한 '무관' 망언 규탄과 정신대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는 여성계의 움직임을 자주 다루었다. 그리고 KBS, MBC TV에서는 8월 특집으로 정신대를 다루기도 했다.

1991년 들어서는 국내 뿐 아니라 국외에서의 움직임 특히 일본정부와 단체 그리고 미국에서 발견되는 사료들을 각 일간지에서는 다루어 기재하고 있다. 상반기의 경우 각 일간지에서는 가이후 일본수상의 방한 동안인 1월 초의 여성계의 활동을 다룬 후에는 비교적 1990년 11월 여성단체들이 모여 만든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발족 이후의 여성계의 활동, 5월 강연회 등만을 간헐적으로 실고 있다. 그러다가 하반기 특히 8월 들어 김학순씨의 국내증언을 계기로 정신대문제는 다시 크게 다루어지게 되었다. 이후 11월 들어 오끼나와에서 거주하던 전 위안부 '배봉기'씨가 혼자 사망한 사실이 밝혀지고 이에 대한 애도의 글들이 실렸고, 김학순씨를 위시한 위안부 출신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발표되고 정신대를 일본군이 관할했음을 알리는 자료가 미군보고서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도 보도되었다. 이 후 문옥주씨가 대구에서 신고한 사실이 보도되고 특히 12월에 접어들면서 국회 외무위에서 정신대 문제를 청원한 민간단체들의 청원서가 중인 참여 아래 검토되었다는 사실이 보도됐고 일본에서 김학순씨 등의 증언이 이루어지고 일본 해군군속이 정신대 여성들이 탄 잠수함을 폭사했다는 증언이 보도되고 정신대 항의가 주부와 한인들이 중심이 되어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다. 그리고 이 시기 TV의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뉴스를 제공 했고, MBC KBS 각각이 문제를 극화하여 다루었다. 주간 월간 잡지들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기우렸다.

1992년 들어서는 연초부터 정신대 문제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주목을 받는 큰 관심주제가 되었다. 특히 가토 일관방장관이 김학순 씨 등의 정신대 중언에 대해 '일본정부로서는 대처하기 곤란하다'는 망언을 한 후 여성계는 일본정부의 사과가 있기까지 지속적인 시위를 결의했따. 1월 8일부터 실시된 정신대 협의회의 수요정기 시위를 필두로 미야자와 일본수상의 방한이 이뤄진 14일 전후로 이 문제는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관련문서나 당시 위안소 상황 등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 보도되었다. 특히 정신대협의회의 모든 활동상황이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14일 이후 피해신고자들이 대폭 증가하게 됨에 따라 대중매체들의 보도도 폭증했다. 이런 과정에서 대중매체들은 사실 확인도 해 보지 않고 무책임

하게 보도한 경우가 많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안부와 근로정신대를 혼동하여 보도하면서 중폭된 일반인들의 관심을 총족시키는 데 급급한 실책을 범하기도 했다.

미야자와 일본수상의 방한 반대시위 도중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회 소속 주기성 씨가 원인규명이 되지 않은 채 사망한 후 미야자와 수상이 여러 사실자료 와 여론에 밀려 정신대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하며 면난 이후에도 대중매체들은 계속적으로 발굴된 관련자료와 증언, 민간단체들의 활동과 정부차원의 정신대 신고센타 그리고 각국 언론 및 정부의 동향 등을 꾸준히 다루었다.

특히 1월 31일자로 북한이 대일 수교회담에서 정신대 피해보상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실린 후 다음날 북경 주재 북한 대사가 면담을 통해 북한 또한 우리와 정신대 문제에 대해 같은 보조를 취할 것을 밝힌 사실이 보도되었다. 3월 21일에는 공동대책 제안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후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 부위원장이 이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외활동과 관련해서는 우선 이효재씨(본 협의회 공동대표)가 UN에 정신대문제를 상정하려 출국하는 것, 귀국하여서 기자회견을 한 것, 대만정부 필리핀, 야당에서도 일본에 사과와 보상을 촉구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그리고 프랑스 주간지에서도 정신대를 현대판 노예로 보고 일본의 잔인성을 비판했다는 사실과 홍콩여성들의 위안부 생활이 폭로되고 있다. 그리고 6월 들어서는 태평양유족회에서 다시 일본에 낸 보상소송과 첫 공판에 참석한 정신대 할머니들에 대한 기사가 보도되었다. 문우주씨가 지난 3월에 일본에 갔을 때 위안부 생활 당시 시모노세키 은행구좌로 예치했던 저축액을 요구한 것과 이후 조사로 현재 일본 우정청에 1조엔이 은폐되어 있음이 밝혀지자 각 일간지들은 이 사실을 다루어 다루었다. 일본 정부가 3월 들어 '정신대 보상할 용의가 있다'면서 '동정을 표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을 보도하였다. 그러나 이 보상안이 일본이 진정 '사죄'하는 입장에서가 아니라 단지 현재 생존자가 지극히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위로금' 차원이었다 라고 단정한 국내외 민간 단체들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는 것에 대하여서도 크게 다루고 있다.

그 외 국내에서의 정신대에 대한 활동은 꾸준히 보도되고 있는 편이다. 대체로 1월부터 3월까지는 전반적인 영역 전체를 다루고 있으나 4월 이후부터는 피해여성들과 정대협의 활동이 그 중심을 이루고 정부의 태도 등도 살고 있다.

김학순 씨가 입원했다는 사실, 정대협이 정신대문제를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는 사실과 공청회의 내용, 그리고 법무부에서 밝힌 정신대 배상 정부청구의 가능성, 이와 더불어 현재 위안부 출신들의 심각한 생활고를 다루거나 위안부들이 모여 만든 '무궁화자매회' 등을 다루고, 불교 여성단체에서도 정신대 문제해결을 위해 동참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

특히 7월 들어서는 정부가 설치한 신고센타에 신고접수된 신고자 수와 정부  
지원에서 대책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각 일간지에서는 다루었다.(근  
로정신대 235명, 종군위안부 155명) 민간단체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정대협이나  
태평양유족회의 활동을 꾸준히 다루고 있고 정대협, 태평양유족회, 민주주의 민족  
통일 서울연합, 평화연구소, 반핵평화운동연합,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등 6개 단  
체가 「일본 군국주의 부활처치와 전후책임을 확실히 하는 연대회의」 협의체를 발

족했고, 아시아 여성들이 연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사실을 자세히 다루었다.

한편 일본이 정부차원에서 정신대 문제를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나서 보고한 정부 보고서에서 일본이 위안소를 설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위안부 동원이 강제가 아니었다라고 한 일본측 발표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일본에서 과연 이 정신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여건 속에서 신문독자들은 정신대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반짝'하고 끝나기를 바라지 않는 바램을 투고했다. 또한 일본정부측의 정신대문제를 축소하려는 의지에 의문을 품으면서 현재의 생존자들을 위해서 국민적 차원에서 모금운동이 필요하다라는 논설이나 독자투고를 실기도 했다.

이런 사실 외에도 대중매체들은 일본 내 우익들의 움직임이나 부활되는 신군국주의, 혹은 PKO법안 통과 등과 관련해서 이 문제를 다루기도 하고 국내의 경우에도 모든 사람들이 전부 호의적이 아님을 부산의 사례를 들어 다루기도 했다(부산 대청공원 내의 정신대 위령비를 세우고자 하는 부산 여성단체의 요청에 대하여 보훈단체 중심의 반대시위가 있었음이 보도됨) 그러나 현재까지 이런 움직임은 필요이상으로 크게 보도되지는 않고 있다.

\* \* \* \* \*  
이상의 보도자료 가운데 신문자료는 1990년 부터 1992년 2월 1일까지 자료집 1판(1991년 5월)과 그 수정증보판(1992년 2월)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그 자료를 참고하기 바란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1992년 2월 1일 이후의 기사만을 각 주요 주제별로 수록하였다. (앞서 밝힌 윤정옥씨의 한겨례 연재글은 앞서의 두 자료집에 별도로 독립하여 있다.)

한국

1992年2月13日 (木曜日)

본의 책임을 카구하고 국  
제여론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12일 미국으로 떠난  
李効再씨(한국전선대문  
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의 첫마디는 삐끗 비판적이  
이다.



리정부가 미로지 차지권 사회, 면밀먼지 재민고조  
을 확보한 지자 청탁당한 사회, 일민단체, 그들  
야 할 역사적 흐름이었다. 특히 민간단체(NGO)의  
행동은 민족인재 전투는 전족, 정부와 함께 힘의  
결하고 민간이 나서야 할 U자 모양의 민족운동  
【】  
민족인재 전투는 전족, 정부와 함께 힘의  
결하고 민간이 나서야 할 U자 모양의 민족운동

는 것이다. 그러나 그간 과정을 병역  
법상의 규정으로서는 지난  
1월 27일 개막, 3월 6일  
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으나 전신대회  
체육대회는 스위스로 적  
행할 경우 전국 차별을 할  
수 없어 올해 미루어도  
간다.

「한국 박체기를 멈춰놓고  
우리에게 전화하던 그때  
제가 역사의 길이로 돌아  
있다는 것은 민족적 수부  
치」라고 허준표는 지적한  
다.

정부는 최근 청와대 안  
부문에 해결의 전망 나서  
겠단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대변인 정부로부터 청소  
회의 이과제 청탁지침이 있  
나 현장에서 어떻게 움직  
여야 하느냐에 대한 최소  
한의 협의조차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吳美煥記者】

# 延身隊 두한미니 日서 痛恨의 전언

나주군 이전 손아래에  
나주 어려운 시대를 대체하는  
길이 되었을 때에 드디어

나주

지 20년 만에 한국 이전을  
이 멀리 떠나려고 노력을 감  
으로 해생활이 또 위험부를  
의 대부분이 학살당했다고  
보도했다.

## 挺身隊는 현대판 노예

## 유럽인들에 '충격적 뉴스' 波紋

고  
작아 때면서 「진신대가  
불복주군 의해 군부 경찰로  
이 것이 아니라 미군이의 소행  
이었기 때문에 국가로서 절  
봉이 죄를 범한 것이다」고 부연  
설명했다는 것이다. 「군데  
작년 12월 3일경 학교 무상  
들이 노로벌린 「수습부대」  
에 입대해 청소년으로 10주  
부터 열흘인 걸이 열리기  
시작된다.  
이  
이 보도는 한국전쟁의 고  
발을 「1945년 이전 일  
본에 회생된 개인이 그들의  
권리를 요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본에 사가를 해  
의해 문서가 발급해 공개되  
자 일본정부의 「우리」는

性의 노리개삼다임신하면 청향  
역사상 이런만행 日 말고 없었다

개삼다 임시  
련만행 日만  
도전설에 서서 韓朝의 일본  
과 차이가 없어야 이행하고  
특히 주를 끄는 대로인  
이 주간지가 정신대를 험하고  
관 여전으로 다른 사설이  
다. 「한국에 『일』의 여가로  
30~50명의 군대를 상대하  
었다.」 「한국에 『일』의  
노르

에 조치 비길 수 없는 흐름에  
임한 역사상 어려운 때였다.  
노예도 남의 나라 남자  
에게 이처럼 참혹하게 몰한  
예는 없다. 절군자라는 정신  
과 자를 소개한 보도문인 우리 모두가 알  
고 있는 사실이지만 엄신  
한 처지를 처벌하였다는  
고 없었다.

수록 나빠지는 日韓關係라는 대립(문화 충돌 3월)가 지나면서 정신 대문제를 계기로 한 학교의 대민 교육을 예상하는 일본이었다.  
유럽인까지 과정을 염이  
친 정신대문제는 역사와 민족  
성을 노리는 일본인에게는  
열등한 청교도 될 수 있으리라  
라고 봤다. 다만 韓日 교류  
정책을 韓日교류학자 이  
치미 남북한의 미군을 축출  
후 韓日교류, 서북부 韓日  
기본정책을 제정한 5·16 혁명  
전후 단계 학교를 차지에 진  
고 평가야 한다. 이 세력은  
온갖 일상이 예술을 떠나  
본래의 본래로 돌아온다. 단  
기 3·24 총선에서 「국  
은 민사를 일본에 비전서에  
한 「진언」를 실천해야 만  
한다.

파리의 좌파지성지 누벨  
뉴세로바티르(주간)는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의 증군위안부  
문제를 「공포의 사찰들」  
이란 제목으로 크게 다뤘다.  
나아가 주간지 12·18호에는  
1933년부터 45년까

해 벨트인이 가족처럼 역사에 대한 무방성 태도를 지탄하는 게기가 될 것이다.  
나치점령시 대표사의 암릉으로 점과 애지 않던 프랑스나 러시아 등 유럽의 피해국들도 전신대와 같은 비

를 알게 되는  
죽어라 뉴스로서  
일본군이 전쟁을 다시 한  
번 일으키고 있다.  
『제일전쟁』이 이에 소  
드는 오랫동안 역사의 그늘  
속에 숨겨져 있었다고 쓴  
이 보도는 1945년 5월

- 138 -

## 정신대 문제 유엔 상정 “가능성 높다”

오는 5월 인권위 분과위원회에서 정식거론 약소



한국 청신대문제 대책 회의회  
한국 청신대문제 대책 회의회 이호자·공동대표기·자나니-7의 국군 보고 기자회견에서 윤에 시드로 빠른 경과로 신의회·아이

내년에 열리는 <유엔 세계인권회의>에 정신대문제를 정식으로 상정하기는 우리의 끈질긴 노력이 소극의 성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는 정신내분세 유엔상을  
정위하는 서류와 편지를 갖고  
지난 2월 유엔 사무국이 있는  
미국 뉴욕 등을 방문했던 <한국  
정신내분세 네트워크> 이호재  
총동대표가 지난 17일 오전에  
가진 <기부보고 기사회견>을

통해 치유 밝혀진 것으로 유엔  
세계 결정적 대표권을 지닌 민간  
단체 등이 정신대 문제 상정에  
여지 약속을 보낸 것으로 전해  
야속했으며 이 분기위에서  
문제제기가 상정질차상 첫 단  
로 결정적 영향력을 지닌다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이에 앞서 뉴욕엔사부-국을 방문, 인권위원회를 담당관에게 청와시류를 전달, 궁정적 담면을 입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미엔나에 끝난 여성지위위원회에도 제25회 이 시류는 □한국정신대역 역사적 배경 설연과 □학교

신대대책위의회가 모성분제 등 일본정부에 요구한 사항이 포함돼 있으며 유엔 인권위에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단 파견을 강력 요청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한편 이처럼 정신내문제  
유엔 상정 노력이 긍정적 반응  
을 얻고 있는 것은 성폭력 이슈  
가 미국을 위시한 구리과 동시에  
에서 여성의 인권과 관련 국제  
적 관심거리로 등장했기 때문이  
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 대회에 따르면 지금  
미국에서 한층 고조되고 있는  
반일 감정 분위기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

이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의 이런 노력을 폐해 보상  
보다도 일본의 반인류지 범행이  
세계아사와 유엔기록에 남기지  
길 바라는 것”이며 “경재아사  
국인 일본이 안정보장이 사회의  
상임국이 되려는 시점에서 진정  
그들이 평화와 인권을 존중하는  
가를 이 문제 처리를 통해 실증  
토록 강력히 촉구해 나갈 방  
침”이라고 밝혔다.

정신대문제 대책 험의 회는 또 이번이 대표 피건의 성과를 기초로 험지 여성운동단체와 인권단체 등이 기획했던 방법의 하나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이 문제 제소를 추진한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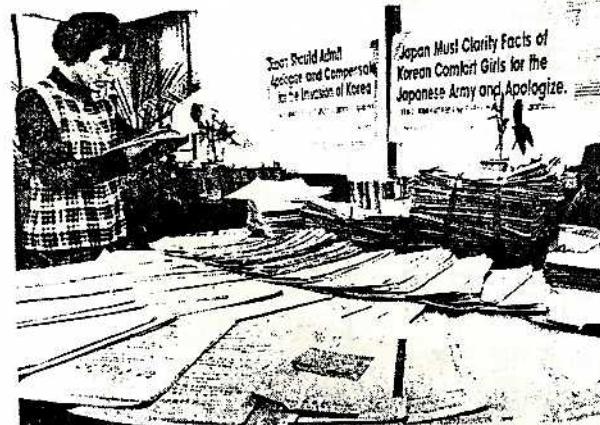


## 정신대등 지역별 조사착수

對日策

# 勞岱청구등 실무반 운영

# 日帝정용 피해자 450명 國恥에 접단 損賠訴



【朝日민간법률구조회】는 임재정용의 회생자인 정신대동 피해자 4백50여 명으로부터 배상신청서를 접수받아 29일부터 지역별 현지실태조사에 나섰다. <徐英洙>

장신대 日 법정 첫 증언

47 **부록** | **제작자**

韓日 협정 굴리 벗는 想 전환

25-3 82.4.2

## 국제법상 '중대한 사정변경' 해당



이화여대 교정에서 영문과 재학생들과 즐겁게 담소중인 정신대 할머니들. <곽윤섭 기자>

## 정신대 할머니·여대생들 세대 뛰어넘어 아픔 공감

#### 이대 영문과 마련 '돌기장터'서 즐거운 하루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 종군  
위안부를 지난 정신대 할머니  
5명이 29일 오후 이화여대 교  
정에서 여대생들과 모처럼 즐  
거운 하루를 보냈다.  
합창하자 할머니들은 “우리도  
노래하겠다”며 〈노들강변〉 〈낙  
동강〉 등을 여대생들과 손뼉치  
며 함께 불렀다.  
경기도 남양주군에서 비닐하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몹시  
꺼리는 할머니들이 여대생들과  
자리를 함께 한 것은 이화여대  
개교 1백60년 기념 축제 행사의  
하나로 영문과 학회가 '정신대  
할머니 드디기 장터'를 열면서  
할머니들을 초청해 이루어졌다.  
우스 발일을 하며 살고 있는  
강덕경(64) 할머니는 13~17살  
꽃다운 나이에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 종군위안부 노릇을 하  
던 여성들이 한을 일본군기에게  
담아 부르던 <정신대 노래>를  
불러 주위를 속연하게 했다.

“손녀뻘 되는 여대생들이 이런 자리를 마련해줘 여간 기쁘지 않아요. 가족도 없이 홀로 사는 우리들이 모처럼 훈훈한 정을 느낄 수 있어 뭐라고 고마움을 표시해야 할지….”

“바다건너 산 넘어/ 멀리 천리길을 정신대로/ 아득하게 떠오르는 우리 반도/ 어머님의 얼굴이 또 떠오르네.”

‘정신대 할머니 둑기 장터’를 마련한 영문과 학회장 김경숙(2

경기도 성남에서 율락 은 심 미자(69) 할머니는 목이 매 말 을 잊지 못했다.

중 강당 앞 잔디밭, 라면상사를 모조지로 한 임시식탁에서 빈대며, 순대등을 대접받은 할머니들은 여태 생들에게 순대를 먹여주기도 하고, 순을 잡으며 “우리들이 당한 억울한 설움을 잊어선 안된다”고 참았었던 그 시절을 들려주기도 했다.

영문과 2학년생 10명이 "우리는 이땅의 노동자... 자랑스런 땅토 태어나... 고귀한 모성 모호 다름없지 버리고..."로 이어지는 〈땅돌아 워어나라〉를 서명자 명단을 비롯해 장터 수익금 전액을 정신대 위령비 기립기금으로 한국정신대문재단 핵협의회에 전달했다.

《한민국》 17

# 할머니가 변장한 사업

판권

**정신대 자료집 Ⅱ**

정신대 자료집 Ⅱ

왜, 우리는 지금 이 문제에 도전하고 있는가?

펴낸 곳 한국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

펴낸 날 1992년 8월 10일

찍은 곳 함께 하는 기획 신명 (275-0451, 273-6128)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46

기독교 회관 802호 Ⓛ 110-470

전 화 365-4408~9